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다-10

시장분석 및 회계제도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rket Analysis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Accounting Regime)

2011.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다-10

시장분석 및 회계제도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rket Analysis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Accounting Regime)

함창용 외

2011.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시장분석 및 회계제도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함창용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변정욱 연구위원

정훈 부연구위원

최아름 연구원

이경석 전문연구원

목 차

요약문	ix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제 2 장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	5
제 1 절 시장분석개요	5
제 2 절 방송시장분석	5
1. 재산상황 공표집	5
2.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7
3. 기타 분석업무	9
제 3 절 통신시장분석	9
1. 분기별 영업실적 분석	9
2. 통신시장 현황 분석	14
3. 기타 분석업무	17
제 4 절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	19
1. 시장분석기능 강화의 의미	19
2. 연구협의체 구성	19
3. 내재화를 위한 연구인력 강화	20
4. 철저한 위탁연구용역 관리	20
5. 시장분석 시스템 고도화	21
제 3 장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23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개요	23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필요성	23
2. 규제제도와 규제회계정보	24
3. 회계규정과 회계기준	30
4. 회계분리지침서	35
제2절 회계처리 질의·회신 절차	37
1.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절차	37
2.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절차	43
3. 전기통신회계의 질의·회신 절차	45
제3절 사후적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46
1. 영업보고서 검증 현황	46
2. 영업보고서 검증체계 개선방안	48
3. 회계위반 과징금 제도	51
제4절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55
1.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 해설서	55
2. 회계교육제도 수립	56
3. 질의·회신 절차 확립	60
4. 회계분리지침서 검토 강화	63
제4장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65
제1절 방송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운영	65
1. 회계제도 운영 개요	65
2. 회계정보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66
3. 시장분석보고서	67
4. 회계제도 수립과 운영의 일원화	68
제2절 국가회계기준센터	70
1. 설립배경	70
2. 조직 구성 및 예산	71
3. 역할	73
제3절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 설립 방안	77

1. 수행 업무	77
2. 조직 구성 및 예산	80
3. 운영주체	83
제 5 장 결 론	85
참고문헌	88
〈별첨 1〉 재무비율지수	90
〈별첨 2〉 통신산업의 규제재무제표 검증 절차 및 기관	97
〈별첨 3〉 유럽의 통신산업 규제재무제표 검증 기관	99
〈별첨 4〉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102
〈별첨 5〉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108

표 목 차

〈표 2-1〉 사업자의 연도별 방송 매출액과 점유율	6
〈표 2-2〉 사업자의 수익원별 방송 매출액과 점유율	7
〈표 2-3〉 지상파방송사업자 손익 현황	8
〈표 2-4〉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익성 지표	8
〈표 2-5〉 KT의 별도 손익계산서	10
〈표 2-6〉 SK텔레콤의 요약 재무제표 현황	10
〈표 2-7〉 KT 유선부문 상세내역	12
〈표 2-8〉 SK브로드밴드의 마케팅 비용 현황	12
〈표 2-9〉 LGU+ 투자지출 현황	13
〈표 2-10〉 전체 통신시장의 매출액 현황	13
〈표 2-11〉 사업자의 서비스별 시장 점유율	16
〈표 2-12〉 2009년도 전기통신사업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18
〈표 3-1〉 회계규정 제·개정 연혁	31
〈표 3-2〉 회계기준 제·개정 연혁	33
〈표 3-3〉 자회사와의 자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38
〈표 3-4〉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방법	39
〈표 3-5〉 한국회계기준원 질의양식	40
〈표 3-6〉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항목	42
〈표 3-7〉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방법	44
〈표 3-8〉 주식 증여 및 매매 회계처리	44
〈표 3-9〉 연도별 검증대상사업자 및 검증회계법인	47
〈표 3-10〉 회계분리 위반 및 과태료 통계(2004~2009)	52
〈표 3-11〉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부과기준을	53
〈표 3-12〉 금지행위 위반 기간에 따른 필수적 가중 금액	54

〈표 3-13〉 사업자를 위한 규제회계제도 교육(안)	57
〈표 3-14〉 검증담당자를 위한 회계분리지침서 교육(안)	59
〈표 3-15〉 방송통신위원회 질의양식(안)	61
〈표 3-16〉 회계분리지침서 검토(안)	64
〈표 4-1〉 회계업무 담당 기관	68
〈표 4-2〉 2010년 예산 사용 내역	73
〈표 4-3〉 국가회계기준센터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업무)	74
〈표 4-4〉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의 업무	77

그림 목 차

[그림 2-1]	KT 분기별 경영성과 분석	11
[그림 2-2]	전체 통신시장의 매출액 추이 및 시장점유율 변화	15
[그림 2-3]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 정보 분석시스템 접속화면	22
[그림 3-1]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법적 체계	24
[그림 3-2]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및 확정 절차 예시	36
[그림 3-3]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화면	37
[그림 3-4]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절차	41
[그림 3-5]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화면	43
[그림 3-6]	검증 업무 진행 과정	51
[그림 3-7]	방송통신위원회 질의회신 절차	62
[그림 4-1]	국가회계기준센터 조직도	72
[그림 4-2]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 조직도(안)	81

요 약 문

1. 제 목

시장분석 및 회계제도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용자보호국의 시장분석팀은 사업자로부터의 이용자보호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분석시스템과 회계제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시장에 대한 분석은 주로 사업자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발표하는 재무회계정보인, '재무상황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분기별 IR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반면에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정책 수립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규제회계정보를 생성하는 회계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과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방송 및 통신의 기술발전으로 서비스가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쌍방향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IP망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초고속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합과 융합이 전개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은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회계정보를 이용한 기업분석과 시장분석의 결과는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유지 및 촉진할 수 있는 규제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규제회계정보가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에 의한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과징금에 의한 규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만으로 규제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적 회계감독 기능인 영업보고서 검증제도와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및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

제2장은 현행 시장분석체계를 시장분석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부터 발간되는 과정과 시장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시장분석업무는 재무회계정보를 이용한 “방송사업자 공표집”,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분기별 영업실적 분석”, “통신시장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수시로 규제회계정보를 이용한 원가분석 업무 등이다. 타 부서에서 수행하는 방송과 통신시장에 대한 분석은 연구대상이 아니다.

제3장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및 법적 체계들을 조사하여 회계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규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게 하는 회계감독 기능의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과징금 제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후적 회계감독 기능과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으로 구분하여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사후적 회계감독 기능으로 과징금제도 운영자체에 대한 운영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계검증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사후적 회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과징금제도 도입을 위하여 규제당국입장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규제정보를 생성하는 회계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영업보고서 검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와의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다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제4장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서비스의 결합과 융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제도 운영시스템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분석기능과 광의의 회계제도 운영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송통신규제정보운영센터 구축방안을 연구한다. 협의의 회계기준인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의 수립 및 운영을 통합하고, 광의의 회계제도인 규제정보 운영을 일원화하여 유용한 규제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

를 총괄하여 수집하고, 검증하고, 분석하는 회계제도 운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회계센터와 같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 설립을 장기적인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장분석 기능 강화 방안,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를 생산하게 하는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맞이하여 중·장기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요약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사업자로부터의 이용자보호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강화에 근본적이고도 기초적인 회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과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 연구는 재무회계정보와 규제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에 유용한 방송과 통신시장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분석내용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방송과 통신시장에 대한 분석은 재무회계정보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과 “방송통신사업자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방송시장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방송사업자 공표집’과 ‘방송사업자 경영분석’이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수록함과 동시에 방송시장의 분류에 따라 지상파, 종합유선, 방송채널 등 시장에 대한 매출액, 수익의 종류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전년도와 단순 비교하는 표를 보고한다. 경영분석은 단순 분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재무비율분석을 수행한다.

통신시장분석은 ‘분기별 영업실적 분석’과 ‘통신시장 현황 분석’으로 구분된다. 영업실적 분석은 사업자의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단순히 재작성한 보고서로 ‘사업자별 분기별 영업보고서’와 ‘분기별 통신시장 영업실적’이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사업자의 ‘경영성과분석’, ‘부문별 수익현황’, ‘마케팅 비용 및 투자지출로’ 구성된다. 경영분석은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전년도 분기와 전분기와 비교하여 사업자의 경영상태를 분석하

고, 부문별 수익현황을 종합하여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며, 마케팅 비용 및 투자지출은 규제측면에서 사업자들의 적절한 마케팅과 투자활동을 유도함에 기초적인 규제정보로 활용한다.

통신시장 현황 분석은 분기별 영업분석을 정리하여 연도별 통신시장을 분석하는 것으로 서론, 국내 통신시장 현황분석, 정책 제안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서론은 통신시장분석을 수행하는 목적을 기술하고, 시장현황분석은 시장 전체, 유선시장, 무선시장으로 구분하여 주요 관심항목을 5개년에 걸쳐서 작성하고 추이분석을 한다. 또한 매출액과 가입자 수에 의한 HHI 지수에 의하여 시장별 경쟁상황을 판정한다.

방송시장에 대한 분석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통신시장에 대한 분석은 시장분석팀 연구원들이 사업자의 IR보고서를 재편집하는 수준이다. 현재 방송통신시장 분석은 방향을 잃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분석기능을 시장분석팀의 기능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4개를 모색하였다. 첫째, 위원회의 실과 국을 대표하는 인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와 소비하는 부서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유용한 시장분석정보를 산출한다. 둘째, 시장분석팀 연구원과 회계법인에 의한 시장분석업무를 정규직 직원에게 담당하게 하여 업무를 내재화한다. 셋째, 내재화가 어렵다면, 현재 회계법인에 의한 기초적인 재무적 정보만을 생산하는 틀에서 벗어나 방송과 통신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재무정보와 규제정책을 연결하게 함과 동시에 분석의 계속성을 보장하게 한다. 넷째, 현행 회계정보분석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하여 규제정책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분류하고, 가공하고, 온라인하여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한다.

둘째,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연구는 규제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유용한 정보를 사업자들로 하여금 회계제도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정하게 생산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생성되는 재무회계정보와는 달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회계정보의 생성에 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장한다.

규제회계정보를 생성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규정', '회계기준', '회계분리지침서'로 구성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규제정책하에서 전기통신 역무별로 회계분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무별로 생성된 규제회계정보는 규제

정책이 요구하는 회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시 분리와 집계과정을 거친다.

회계감독 기능은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과 사후적 감독기능으로 구분된다. 사후적 감독 기능은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가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기능과 검증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 책임을 묻는 제재기능으로 구분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의 실효성 및 신뢰성의 증가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제도를 과징금부과제도로 전환하였다. 과징금제도로의 전환으로 영업보고서 검증업무와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업보고서 검증은 가장 중요한 회계감독 기능이다. 1997 회계연도 검증까지는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검증업무를 실시였으며, 이후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의 감독하에 외부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고 있다. 매년 검증대상사업자와 검증회계법인이 상이하며, 2010 회계연도의 검증대상 사업자로 15개를 선정하고, 접속원가검증대상 사업자를 A그룹으로,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를 B그룹과 C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상이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검증하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은 영업보고서를 3월말까지 제출하며, 검증팀의 실질적인 검증 작업은 6월 말 혹은 7월초에 수행하여 12월말에 종료된다.

영업보고서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영업보고서에 포함된 규제회계정보는 그 자체로도 규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고, 다른 기준에 의해 다시 분류되고 수집 내지 가공되어 규제정책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규제회계정보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증 회계법인 선정절차 지연으로 검증기간이 축소되고 매년 검증기관이 바뀌게 됨에 따라 때문에 질 높은 검증과 신뢰성 높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보장할 수가 없다. 때문에 검증기관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선정하여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사전 검증업무인 회계규정, 회계기준 및 회계분리지침서를 숙지하도록 하여 검증 대상 사업자의 영업내용, 서비스 제공절차 및 원가배부 원칙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검증의 통일성을 위하여 검증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보고서 검증체계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검증체계로의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으로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 해설서 출간, 회계교육제도 수립, 질의회신절차 확립, 회계분리지침서 검토 강화 등이 있다. 2009년 2번째 해설서 발간 이후 통신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회계규정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자간의 해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해설서를 별도의 보고서로

출간한다. 해설서는 각 조항별로 먼저 요지를 설명하고,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며, 필요시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유권해석과 자문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검증결과 지적되는 오류 사항들의 대부분은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되었다. 해설서의 발간만으로 이와 같은 사업자와 규제 당국자의 이해도 부족을 메꿀 수 없으므로 교육제도와 질의회신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교육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 검증담당자, 통신위원회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맡은 업무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방송통신규제회계제도, 회계규정, 회계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회계제도에서는 방송통신사업환경, 규제정책과 회계제도 및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와의 차이점 등을 교육하고,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 교육은 역무와 통신망 교육, 역무별회계분리를 위한 영업수익 회계분리, 영업비용 회계분리, 자산의 회계분리 등 실질적인 회계분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서 발간과 교육 실시로 규제회계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절차에 대한 의문점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간접적이고도 비공식적인 질의회신절차가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질의회신 절차가 필요하다. 질의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센터'에 가칭 '규제회계질의회신 Q&A 게시판'을 설정하여 사실확인이 필요없는 단순질의에 답변을 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의 양식을 정식으로 갖추어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법이 있다. 서면질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당자가 답변하는 경우, '질의회신위원회'가 답변하는 경우, '확대 질의회신위원회'가 답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회신기간은 접수 후 익일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로 하고, 자료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와 질의회신위원회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료 보완 제출일과 결정하지 못한 일을 최초 접수일로 간주한다. 질의양식에 의하지 않은 경우, 자료 보완을 응하지 않은 경우, 질의자의 신원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질의 범위를 넘는 내용에 대한 질의하는 경우는 질의서를 반려한다.

사업자는 영업보고서 검증 이전에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에 기초하여 작성한 '회계분리 지침서'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검토를 받고, 검토 받은 지침서에 의하여 실질적인 회계분리를 수행한다. 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증과정에서 지침서에 대한 내

용에 대하여 사업자, 검증담당자인 담당공무원과 회계법인의 검증담당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해관계자들의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침서에 대한 검토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도 있다. 지침서의 검토는 사업자,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이 함께 사업자가 영업보고서 작성 이전인 11월 혹은 12월 2~3일간 걸쳐 실시한다. 사업자가 지침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참가하여 함께 토론하며 사업자에 맞는 적절한 회계분리 절차 및 방법을 찾아가는 협동 검토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자로부터의 이용자보호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계제도 운영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분석기능과 회계제도기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칭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회계제도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방송사업 회계제도는 수립과 운영이 시장조사팀으로 일원화되었으나, 통신사업 회계제도는 제도 운영은 시장조사팀이 담당하며 제도수립은 통신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수립과 운영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회계제도의 수립은 규제정책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회계처리하는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회계제도의 운영은 영업보고서 검증과 정책 집행과 관련된 원가정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재무회계정보를 이용한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투자보수를 산정하게 하며, 망내통화량과 망외통화량을 검증하고 호유형별 통화량과 설비별 통화량을 예측한다. 재무회계정보를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재무분석을 하고 있다.

회계제도를 협의의 회계제도와 광의의 회계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회계제도인 회계규정과 회계기준 수립과 운영은 방송사업 회계제도와 동일하게 시장분석팀이 담당한다. 광의의 회계제도는 방송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회계법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협의의 회계제도와 광의의 회계제도에서 규제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산출한다. 광의의 회계제도에서 산출하는 회계정보의 대부분은 협의의 제도에서 산출하는 원가정보를 재분류하고 재배분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여 중복된 업무를 상당 부문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분석기능과 회계제도기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가칭 방송통신 규제정보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센터의 업무는 시장조사팀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업무의 통합화 및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통신회계자료의 일부 검증 업무 및 원가분석 업무를, 중기적으로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통화량 검증, 접속료 산정,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등의 업무를,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송통신 회계제도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 수행, 외국 전기통신 회계제도 분석 및 규제회계제도에 대한 교육 관련 업무까지 포괄해야 한다.

센터의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회계제도팀, 접속검증팀, 원가시장분석팀으로 구성하여 회계제도팀은 협의의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접속검증팀은 규제정책과 관련된 원가정보 검증 및 생산, 원가시장분석팀은 방송통신시장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센터의 예산은 운영주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부조직에 속한다면 정부예산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혹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면 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 가장 최선의 운영주체는 정부조직 혹은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 현재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센터로 설립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5. 정책적 활용내용

본 과제는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시장분석 및 회계제도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적 활용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규제정책 수립, 개선 및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적인 활용을 전제로 하는 2차적인 규제정책인 규제정책운영에 대한 연구이다.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유용한 정보 생산을 위하여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가능한 분석업무를 내재화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정규직원으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내부화가 지체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회계법인보다는 규제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는 연구기관에게 위탁하여 계속성을 유지하고,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정책담당자가 항상 이용토록 해야 한다.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영업보고서 제출을 기준으로 사전적 감독기능과

사후적 감독기능으로 구분된다. 사전적 감독기능은 효율적인 사후적 감독기능을 위한 방안으로 영업보고서 작성과 검증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규제회계제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전 감독 기능 시스템은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 해설서 출간 및 교육, 회계제도에 대한 질의 및 회신 절차 구축, 회계분리지침서 검토 강화 등을 담당한다.

사후적 감독기능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계검증시스템을 구성하여 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의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검증시스템보다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검증시스템으로 환원하는 것이 검증의 통일성, 계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또한 규제회계 검증대상 사업자를 규제정책에 유용한 규제정보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국한하는 규제회계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분석기능과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수립과 운용이 분리된 통신회계제도를 방송회계제도와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정책수립과 운영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반면에 방송회계는 다양한 규제정책 수립과 운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채널별 회계분리제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유용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과 연구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화하고 일원화하여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업무의 내재화를 통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부 조직으로의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독립된 연구기관의 설립 혹은 기존 연구기관의 부속기관화 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으로 협의체 구성은 규제회계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규제정보를 생산하게 되어 보다 유용한 시장정보를 생산하게 되고, 분석의 내재화 혹은 연구기관으로의 위탁은 시장분석의 계속성과 규제정책과의 연관성을 유지하여, 시장환경에 기초한 규제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방송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은 영업보고서 검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해설서, 교육제도와

질의 및 회신제도를 통하여 회계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다툼을 최소화한다. 철저한 회계분리지침서 검토 방안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다툼을 최소화 하여 회계제도 생태계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태계로 구축할 수 있다.

사후적인 회계감독 기능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혹은 역무별 회계보고서가 회계제도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규제회계정보를 생산하게 함으로 서비스 혹은 설비의 적정한 원가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게 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자 중심의 가격정책보다는 산업 중심 혹은 가입자 중심의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 산업발전과 소비자인 국민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시장분석기능과 회계감독 기능을 통합화하고 일원화하여 두 기능의 시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회계정보 뿐만 아니라 비회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독립된 기관에서 운영하게 함으로 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비가격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유용한 규제정보를 생성하게 한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Market Analysis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Accounting Regime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As the business environments have been changed due to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improvements, the complex regulatory issues have to be set up very rapidly. As a result, it is more important not only to analyze the market environments, by using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but also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gulatory policies, by using regulatory accounting information, to protect consumers' right from operators and to promote fair competition among operators. KCC recently introduced a 'penalty system' as a way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regulatory accounting information, of which operators should report their annual financial report by the law. It is the appropriate time to research what should be done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the market analysis system, to strengthen the audit function for regulatory accounting system, and to build up a whole supporting system for regulatory policie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paper researches ways of enhancing the analysis function of the broadcasting and the communication market, of improving the audit function for regulatory accounting, and of creating a body for supplying accounting information and non-accounting information

for regulatory policies.

Chapter 2 reviews the process of a market analysis from collecting data to publishing reports. It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market analysis function by removing the weakness of the market analysis team . However, it only deals with the market analysis works of the team.

Chapter 3, firstly, covers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regulatory accounting system for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for understanding the system. It goes over the current practice for auditing the financial statement submitted by the companies. It divides the process of auditing into two parts for strengthening the audit function: the *ex ante* auditing function and the *ex post* auditing function.

The *ex ante* auditing function consists of the education function and the preparation function. It finds the ways to educate for the regulators, operators and auditors understand the process of making the financial statements required by the law. It suggests a program for answering questions the operators might ask when they prepare the financial statement. The *ex post* auditing function consists of the auditing function and the after-auditing function. The auditing function redesigns the auditing itself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for the better auditing performance. The after-auditing function looks for the ways to correct the operators wrongdoing.

Chapter 4 deals with the ways to improve the market analysis system and the regulatory accounting system in the long run. It considers an organization which collects, produces, audits, and analyzes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non-accounting information needed for regulatory policies.

The last chapter summarizes the research results and make implications.

4. Research Results

Chapter 2 suggests 4 ways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market analysis. First, set up a committee in which information providers and information users can decide what

information is useful and needed for regulatory policies. Second, internalize market analysis assignments with regular officers. Third, let research institutes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o market research rather than accounting firms if internalization is impossible. Fourth, level up the current accounting analysis system and supply information on-line to policy makers.

Chapter 3 divides the auditing function into two parts, *ex ante and ex post*, to make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the function. Auditing function is the most important one in the regulatory accounting system. First, reducing the number of operators to be audited and auditing intensively those selected. Second, starting the auditing process earlier than now. Third, auditing them only with KCC own employees or with experts in research institutes rather than accountants in accounting firms.

It revises a manual for regulatory accounting system, suggests programs to train persons involved in the auditing and/or making the statement, advises to the 'Question and Answer' procedure for operators to ask questions about the accounting procedures, and provides scrutinize the cost allocation submitted by the operators.

Chapter 4 investigates the ways to strengthen the market analysis system and the regulatory accounting system in the long run. It proposes an institute separated from KCC to collect, produce, audit, analyze the accounting and the non-accounting information. The institute would be consist of three teams, 'accounting system team', 'auditing team', and 'cost and market analysis team'. Its accounting job should include not only auditing accounting procedures but also making and revising accounting procedur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paper does not give specific policy suggestions, but gives suggestions how to build up the systems for providing the information for the policy makers. For improving the market analysis, internalizing the market analysis system with a 'providers and users committee' for the better use of the analysis. For strengthening the accounting function,

the auditing function should function properly by internalizing and redesigning the procedures. For leveling up the auditing system, create *ex ante* auditing environments by publishing an accounting manual, training persons involved in the auditing matter, providing 'Question & Answer' procedure, and reviewing the cost allocation manual in detail. In the long run the market analysis and the accounting system should be internalized by establishing an institute. This institute, which collects, produces, audits, analyzes the accounting and the non-accounting information, is better to be separated from KCC to have experts in various research fields.

6. Expectations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and manag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regulatory policies by providing more useful and timely information. They will level up the broadcasting and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increase the welfare of the society by implementing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How to Improve the Market Analysis Ability

Chapter 3. How to Strengthen the Auditing Procedures

Chapter 4. How to Build 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Chapter 5. Conclus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의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 및 통신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을 재무회계정보와 규제회계정보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방송시장의 현황분석은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황’ 자료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의 경영을 분석하고 방송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통신시장에 대한 분석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분기별 IR자료를 이용하여 각 사의 경영현황 및 재무상태를 분석한 후 통신시장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한다.

최근 방송 및 통신의 기술발전으로 서비스가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쌍방향으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IP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결합과 융합으로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분석은 더욱 중요한 규제수단이 되었다.

규제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여러 가지의 규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전기통신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회계분리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따른 사업자의 ‘접속료’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에 발생하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기준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규제당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시장에서 상호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회계가 제공하는 규제회계정보, 기업회계기준이 제공하는 기업회계정보,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금시스템이 제공하는 통화량 등을 이용한다. 기업회계정보

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검증된 회계정보인 반면에 규제회계정보는 기업회계 기준과는 다른 전기통신회계제도에 의하여 산출된 회계정보이기 때문에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하에 검증이 되고 있다. 최근 영업보고서의 회계정보가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당국은 과태료에 의하여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과징금에 의한 규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은 서비스간의 결합과 융합으로 인하여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간의 공정경쟁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서비스 시장 분석은 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회계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확보에 미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장분석 운영시스템을 분석하고 전기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를 연구할 것이다. 특히 기업회계정보 이외의 다양한 회계정보와 회계정보 이외의 정보의 필요성을 따져 보고, 시장분석방법도 도출하여야 한다.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회계정보 산출은 과징금제도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유지될 수 없다.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사업자들이 전기통신회계제도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업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사업자가 전기통신회계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들을 교육을 시킬 제도가 필요하다. 사업자의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회계에 대한 해설서를 보다 상세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작성되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이 영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야기되는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계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회계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의 및 회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과징금제도와 병행하여 회계분리지침서 검증과 영업보고서검증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후적인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결합과 융합이 가속화되고 방송서비스가 규제환경 속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 중심의 현행 회계제도 운영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방송·통신의 규제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방송시장에 대한, 회계정보 뿐만 아니라 규제정보도 총괄하여 수집하고,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사용자로부터의 이용자보호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적정하고 유용한 규제회계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통신정책 수립에 보다 튼튼한 밑거름이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에 공헌함으로써 국민후생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및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

제2장은 현행 시장분석체계를 시장분석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부터 발간되는 과정과 시장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능을 보완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4가지를 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실과 국의 인원으로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생산자와 이용자의 가교 역할을 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산한다. 연구인력을 정규화 하여 시장분석업무를 팀의 업무로 내재화한다. 재무정보와 규제정책을 연결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위탁하기 보다는 규제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연구의 계속성과 연관성을 제고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현행 회계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규제정책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분류하고, 가공하고, 온라인화 하여 언제, 어디서나 규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한다.

제3장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및 법적 체계들을 조사하여 회계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규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게 하는 회계감독 기능의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과징금 제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후적 회계감독 기능과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으로 구분하여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사후적 회계감독 기능으로 과징금제도 운영자체에 대한 운영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계검증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

한다.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들과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담당자와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조할 수 있는 '회계규칙과 회계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사업자들이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질의·절차 제도를 마련한다. 질의회신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회신을 할 수 있는 고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면 "회계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안)을 제시한다. 또한 규제정책을 포함한 규제회계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회계교육제도를 사업자, 규제자 및 회계사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회계분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작성한 '회계분리지침서'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서비스의 결합과 융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제도 운영시스템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분석기능과 광의의 회계제도 운영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 구축방안을 연구한다. 협의의 회계기준인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의 수립 및 운영을 통합하고, 광의의 회계제도인 규제정보 운영을 일원화하여 유용한 규제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총괄하여 수집하고, 검증하고, 분석하는 회계제도 운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회계센터와 같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 설립을 장기적인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를 생산하게 하는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맞이하여 중·장기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요약한다.

제 2 장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

제 1 절 시장분석개요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시장조사팀이 방송통신시장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1. 5. 30 시행)'에 의하면 시장분석업무는 크게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과 '방송통신사업자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의 분석'으로 구분된다.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재산상황 공표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재산상황 자료에 기초하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을 작성·공표하는 것이다. 경영분석보고서는 방송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과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자료를 기초하여 방송사업자의 경영을 분석한다. 또한 기타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시장분석은 주요 통신사업자들인 KT, SK텔레콤, LGU+, SK브로드밴드가 투자자들에게 공표하는 분기별 실적발표 혹은 IR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사업자별·분기별 영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통신시장을 분석하여 분기별 '통신시장 영업실적' 보고서를 출간하고, 이를 묶어서 연도별 '통신시장 현황분석'을 작성한다. 또한 기타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2 절 방송시장분석

1. 재산상황 공표집

'재산상황 공표집'은 방송법 제9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재산상황을 공표하는 것이다. 재산상황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황 공표집'은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표집에 단순히 수록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종합하면 시장별로 재산상황을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송시장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즉, 방송시장의 매출액과 점유율을 <표 2-1>과 같이 전체 방송시장, 지상파 방송시장,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위성 DMB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체 방송시장은 시장규모, 주요 수익원별 매출 규모, 사업자 순이익 규모로 보고되었으며, 각 시장도 시장규모, 사업자별 방송매출 및 당기순이익, 주요 수익원별 매출규모로 분석하였다. 즉, 방송시장분석은 손익계산서의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수익원별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만을 이용하여 작성된다.

재산상황공표집은 전체 방송시장규모를 각 시장의 시장규모를 합하여 나타내면서, 아래와 같이 방송시장규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 순이익 및 사업자별 방송매출과 점유율을 설명하였다.

“(매출, 순이익) '10년도 전체 방송시장 매출은 '09년 대비 1조 1,912억 원(13.5%) 증가한 10조 258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779억 원(46.8%) 증가한 1조 1,846억 원

－ 개별 방송사업자의 '10년 매출은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위성 DMB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가입자 감소('09년 2,001천명 → '10년 1,850천명) 등으로 전년대비 121억 원 감소(사업자별 방송매출 및 점유율) PP, 지상파, SO 순으로 매출 비중이 높고, pp사업자는 3조 9,620억 원(39.5%)으로 '09년에 지상파 매출을 최초로 초과한 이후 '10년은 더 큰 격차를 보임”

<표 2-1> 사업자의 연도별 방송 매출액과 점유율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증감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증감률
지상파	32,500	36.8%	36,497	36.4%	3,997	12.3%
종합유선	17,891	20.2%	19,285	19.3%	1,393	7.8%
방송채널	33,004	37.4%	39,602	39.5%	6,598	20.0%
위성 DMB	1,334	1.5%	1,214	1.2%	(121)	-9.0%
지상파 DMB	113	0.1%	145	0.1%	32	28.5%
위성방송	3,503	4.0%	3,515	3.5%	12	0.3%
합계	88,346	100.0%	100,258	100.0%	11,912	13.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방송사업자 공표집”, 4페이지

방송매출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수익원별 매출규모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공표집은 <표 2-2>와 같이 수익원별 매출규모를 수신료수익, 광고수익, 기타 방송수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2-2> 사업자의 수익원별 방송 매출액과 점유율

(단위: 억 원, %)

구분	수신료 수익		광고수익		기타 방송수익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상파	5,866	16	22,162	61	3,997	23	36,497	100
종합유선	11,737	61	1,112	6	1,393	33	19,285	100
방송채널	4,113	10	9,862	25	6,598	65	39,602	100
위성DMB	125	93	45	4	(121)	4	1,214	100
지상파DMB	0	0	77	53	32	47	145	100
위성방송	2,977	85	156	4	12	11	3,515	100
합계	25,819	26	33,414	33	11,912	40.9	100,258	10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방송사업자 공표집", 5페이지

2.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재무제표의 회계정보에 기초한 '경영분석'은 회계법인에 의하여 용역과제로 수행된다. 경영분석은 재산상황 공표와 동일하게 방송시장을 전체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구분하여 수행된다. 분석은 경영분석 개요, 재무현황분석, 손익현황분석, 재무비율, 기타 경영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경영분석을 예로 들면 '경영분석개요'는 경영분석의 목적, 경영분석의 전제조건 및 한계, 지상파방송사업자 구분¹⁾ 등을 다룬다. '재무현황분석'과 '손익현황분석'은 사업자의 재산과 손익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의 손익현황을 <표 2-3>과 같이 보고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구분별 현황, 개별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도 분석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중앙지상파, 지방문화방송, 지역민영방송, 특수방송, 공동체라디오"로 구분된다.

〈표 2-3〉 지상파방송사업자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증감	증감률	구성 비율
영업수익	36,288	40,685	4,398	12.1%	100%
방송사업수익	32,500	36,497	3,997	12.3%	89.7%
기타사업수익	3,787	4,188	401	10.6%	10.3%
영업비용	36,251	39,858	33,607	10.0%	98.9%
영업손익	37	827	790	2164.3%	2.0%
당기순이익	1,940	2,152	212	10.9%	5.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53페이지

‘재무비율분석’은 성장성지표, 수익성지표, 안정성지표 및 활동성지표를 전체 지상파방송과 구분별 지상파방송에 적용하여 산정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익성 지표는 〈표 2-4〉와 같으며, 3개년동안의 수익성지표와 더불어 방송업, 전체산업 및 통신업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하였다. ‘기타 경영분석’과 ‘연결재무제표’도 보고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 개별 사업자의 재무현황, 손익현황, 재무비율 및 주주 현황을 별첨으로 보고한다. 경영분석은 재산 상황보다는 폭 넓은 분석범위를 갖고 있다.

〈표 2-4〉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익성 지표

(단위: %)

지표	2008	2009	2010	방송업	전체 산업	전기 통신업
총자산순이익율	-1.22	3.55	3.73	4.51	4.94	5.51
매출액영업이익율	-4.01	0.10	2.03	9.03	5.88	9.48
매출액순이익율	-1.77	5.35	5.29	7.24	4.50	6.85
자기자본순이익율	-1.554	4.44	4.64	7.10	10.81	11.29
인건비대매출액	25.90	26.11	26.18	17.31	10.26	8.08
금융비용대매출액	0.34	0.35	0.21	2.27	1.51	2.32
이자보상비율	-1,164.90	28.48	953.02	397.17	390.03	408.5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3. 기타 분석업무

국장, 팀장 등이 분석을 요구하면 주요 이슈에 대하여 수시 분석하며, 주요 언론의 기사를 분석 조사하여 작성하며, 타국에서 요구하는 분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주로 현안 위주로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수시분석 과제 중 'SO의 지상파에 대한 재송신료 지급에 따른 수익성 변화 분석·예측' 과제를 예로 들어 기타분석 업무를 설명한다. 'SO의 지상파에 대한 재송신료 지급에 따른 수익성 변화 분석·예측' 과제는 SO와 지상파간의 재송신 대가 협상결과에 따른 해당 사업자 수익변화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향후 행동을 예측하였다. 동 보고서는 방송사업자들이 제출한 2009년 재산상황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와 같은 수시 분석 등은 분석시기의 적시성으로 인하여 단순한 가정에 의하여 연구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의 참고자료만으로 사용된다.

제 3 절 통신시장분석

1. 분기별 영업실적 분석

가. IR 보고서 내용

통상 IR 보고서라고 부르는 분기별 실적은 사업자가 투자자들을 위하여 분기별로 시장에 공표하는 보고서이다. 상기 보고서는 외부 감사 기관이 검토하지 않은 추정 재무실적과 영업성과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후 사업자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주로 발표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의한 회계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분기별 IR 보고서 내용을 KT의 2011년 1분기 실적발표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KT의 실적발표는 첫째, 'Financial Highlights' 라는 제목 하에 IFRS/연결 기준에 의한 KT 그룹 전체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투자지출을 보고하고, 둘째, 'Business Overview'라는 제목 하에 사업을 세분화하여 무선사업, 전화사업, 인터넷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각 사업부문은 실적과 현황으로 구분하고, 실적에는 부문에 속해 있는 서비스의 수익을 정리하였으며, 현황에는 가입자 수 현황을 보고한다. 사업 전체의 영업비용을 손익계산서 보다

세분화 하여, 주요 관심비용항목을 별도로 보고한다. 셋째, 'Appendix'라는 제목 하에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Factsheet'를 보고한다. 별첨에서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기준과 별도기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별첨에서 KT는 아래 <표 2-5>와 같이 별도 손익계산서를 보고한다. Factsheet이라는 제목 하에 관심사인 무선과 유선 서비스의 가입자 수, 이동전화 ARPU 등을 공표한다.

<표 2-5> KT의 별도 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구분	1Q10	2Q10	3Q10	4Q10	1Q11
영업수익	48,948	48,336	51,093	50,807	48,635
영업비용	44,661	41,555	45,372	47,261	43,383
영업이익	4,287	6,781	5,721	3,546	5,251

주: 표의 단순화를 위하여 내용을 축소

자료: KT, "2011년 1분기 실적발표", 13페이지, 2011년 5월 6일

나. 사업자별 영업실적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은 KT, SK텔레콤, LGU+,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분기별 영업실적 보고서를 사업자가 공표한 분기별 실적발표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분기별 영업실적은 사업자의 '경영성과분석', '부문별 수익 현황', '마케팅 비용 및 투자지출'로 구성된다.

<표 2-6> SK텔레콤의 요약 재무제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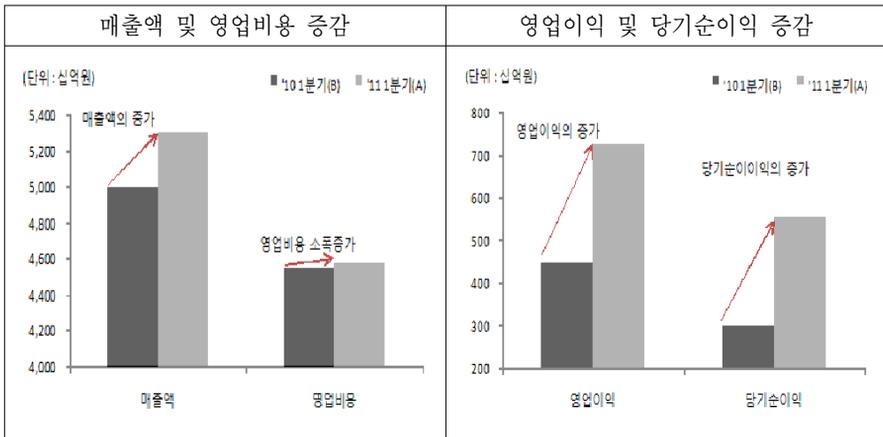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구분	'10 1분기(A)	'11 1분기(B)	전년동기대비		'10 4분기(A)	'11 1분기(B)	전기대비	
			B-A	%			B-A	%
매출액	3,050	3,132	82	2.7	3,211	3,132	-79	-2.5
영업비용	2,535	2,534	-1	-0.04	2,660	2,534	-126	-4.7
영업이익	515	598	83	16.1	551	598	47	8.5
당기순이익	413	561	148	35.8	558	561	3	0.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 "2011년도 1분기 SK텔레콤 영업실적", 2페이지

‘경영성과 분석’은 사업자의 IR 보고서 혹은 실적발표로부터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표 2-6>를 작성된다. 분석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동기 및 직전분기의 데이터를 현 분기의 자료와 함께 작성한다. 또한 현 분기의 재무상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 2-1]과 같이 전년도 동일한 분기와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지표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 KT 분기별 경영성과 분석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 “2011년도 1분기 KT 영업실적”, 1페이지

‘부문 수익현황’은 사업자의 수익을 보다 세분화하여 부문별로 수익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KT와 LGU+의 경우 사업을 유선 부문과 무선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수익을 분석하고 있다. KT를 예로 들면 KT의 사업을 유선부문과 무선부문으로 구분하고, 유선부문을 <표 2-7>과 같이 전화사업, 인터넷사업,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을 상세히 분석한다. 또한 KT 무선부문의 경우 매출액, 가입자현황, 스마트폰 가입자현황 등을 분석하여 수익 증감에 미치는 원인을 규명한다. 세부적으로 현 분기의 초당 과금제, 매출 할인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원인을 제시한다.

〈표 2-7〉 KT 유선부문 상세내역

(단위: 십억 원)

구분	'10 1분기(A)	'11 1분기(B)	전년동기대비		'10 4분기(A)	'11 1분기(B)	전기대비	
			B-A	%			B-A	%
전화사업	1,115	986	82	2.7	3,211	3,132	-79	-2.5
인터넷사업	608	641	-1	-0.04	2,660	2,534	-126	-4.7
기타사업	1,540	1,917	83	16.1	551	598	47	8.5
당기순이익	413	561	148	35.8	558	561	3	0.5

주: 표의 단순화를 위하여 내용을 축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 “2011년도 1분기 KT 영업실적”, p.3페이지

‘마케팅 비용 및 투자지출 현황’은 분기별 영업실적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사업자들의 마케팅 비용과 투자지출을 전년동기 및 전분기와 비교한다. 마케팅비용 현황은 〈표 2-8〉과 같이 판매수수료와 광고 선전비의 합이며 마케팅비용이 영업수익 혹은 매출액에 대비한 비율을 보고한다. SK브로드밴드의 2011년 1분기의 마케팅비용을 보면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 모두 감소함을 보여 주고 있다. 투자지출 현황은 〈표 2-9〉와 같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기타투자자로 구분한다. 2010년도 LGU+의 투자지출을 보면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 모두 투자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8〉 SK브로드밴드의 마케팅 비용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0 1분기 (A)	'11 1분기 (B)	전년동기대비		'10 4분기 (A)	'11 1분기 (B)	전기대비	
			B-A	%			B-A	%
마케팅 비용	1,051	648	-403	-38.3	847	648	-199	-23.5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	21.2%	12.5%	-8.6%		14.3%	12.5%	-1.8%	-4.7

주: 표의 단순화를 위하여 내용을 축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 “2011년도 1분기 SK브로드밴드 영업실적”, p.3 페이지

〈표 2-9〉 LGU+ 투자지출 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10 1분기 (A)	'11 1분기 (B)	전년동기대비		'10 4분기 (A)	'11 1분기 (B)	전기대비	
			B-A	%			B-A	%
N/W투자	200	116	-83	-41.7	261	116	-145	-55.4
기타	22	54	32	141.3	118	54	-64	-54.4
합계	222	170	-52	-23.4	379	170	-209	-55.1

주: 표의 단순화를 위하여 내용을 축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 "2011년도 1분기 LGU+ 영업실적", 3페이지

다. 통신시장 전체 영업실적 분석

사업자의 분기별 영업실적을 합하여 분기별 "통신시장 영업실적"을 작성한다. 동 보고서는 IR 분석개요, 전체 통신시장 현황, 유·무선 통신시장 현황, 주요 관심항목 분석의 순서로 작성된다.

'전체 통신시장 현황'은 매출액, 영업비용 및 영업이익으로 조사된다. 분기별 사업자의 매출액, 영업비용 및 영업이익으로 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들의 각 요소의 합계를 가지고 시장 현황을 파악한다. 사업자별 매출액현황을 〈표 2-10〉과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1년 1분기 주요통신 4개 사업자 전체의 매출액은 10.6조원으로 전년동기('10. 1Q) 대비 2,350억 원 감소(감소율 -2.2%)하였으며, 직전 분기('10. 4Q) 대비 2,550억 원 감소(감소율: -2.6%)"

〈표 2-10〉 전체 통신시장의 매출액 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10 1분기(A)	'11 1분기(B)	전년동기대비		'10 4분기(A)	'11 1분기(B)	전기대비	
			B-A	%			B-A	%
KT	4,895	4,864	-31	-0.6	5,081	4,864	-217	-4.3
ST	3,050	3,132	82	2.7	3,211	3,132	-79	-2.5
SK브로드 밴드	497	518	21	4.2	591	518	-73	-12.3
LGU+	2,424	2,117	-308	-12.7	2,033	2,117	83	4.1
합계	10,866	10,630	-235	-2.2	10,916	10,630	-285	-2.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 "2011년도 1분기 통신시장 영업실적", 5페이지

‘유·무선 통신시장 현황’은 통신시장을 유선시장과 무선시장으로 구분한다. 유선통신시장 현황은 유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및 LGU+의 매출액과 세부수익을 분석하였다. 유선시장에 포함된 서비스는 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이다. 무선 통신시장도 유선통신시장과 같이 무선사업자인 SK텔레콤, KT 및 LGU+의 매출액과 세부수익으로 조사된다. 특히 무선 통신시장의 매출액은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만으로 표를 만들었으며, 사업자가 음성통화, 무선데이터 서비스 및 기타로 구분하여 발표한 매출액을 사용하였다.²⁾

주요 관심항목 분석은 마케팅비 분석, 투자비 분석 및 ARPU 분석이다. 사업자의 분기별 영업실적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ARPU분석이 수행된다. ARPU분석은 유선과 무선 부문으로 분석되며, 유선은 시내·외전화 ARPU와 초고속인터넷 ARPU를 2008년부터 2010년 연도별과 해당 분기별로 조사하였다. 무선 ARPU도 유선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선부문의 ARPU 감소원인을 1인 2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가입자기반 확대, 초당과금제 실시로 영업수익감소, 매출할인 증가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 등의 복합작용 결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2. 통신시장 현황 분석

분기별 영업실적을 정리하여 통신시장 현황분석을 매년 출간한다. 현황분석은 서론, 국내 통신시장 현황분석, 정책제안 및 결론으로 3부문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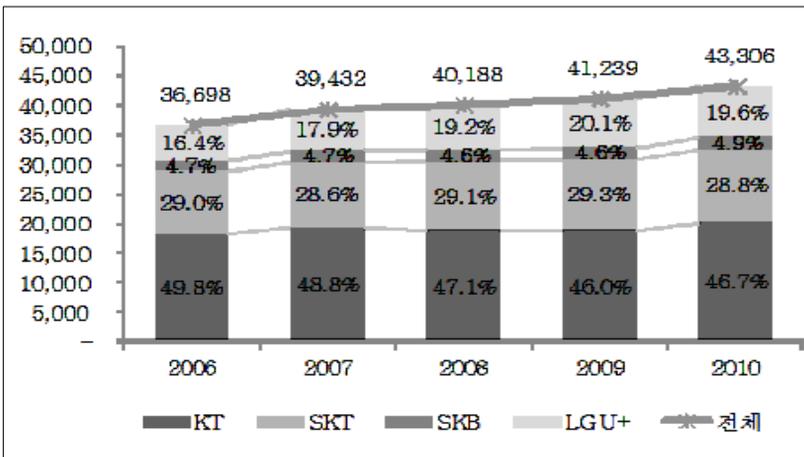
‘서론’은 분석배경, 분석대상 및 내용, 기대효과로 구분된다. 분석배경은 통신시장의 현황 및 흐름을 파악하며, 요금인하여력 및 투자여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함에 있다고 하였다. 분석대상은 전체 통신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및 LGU+의 서비스 및 매출에 한정한다. 분석내용은 매출액과 수익구조 등을 통한 통신시장의 성장성과 가입자현황, 가입자 월평균 매출액, 시장점유율을 통한 경쟁상황을 분석하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비 추이, 투자 및 배당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증가에 따른 요금인하 여력 및 투자여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통신시장 현황분석’은 시장 전체 현황, 유선시장 현황, 무선시장 및 주요 관심항목

2) 세부수익 중 기타는 망접속수익 및 신규사업 등의 기타 수익을 의미한다.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 전체 현황은 통신시장의 매출액과 수익구조를 분석하였다. 매출액 분석은 영업실적과는 다르게 [그림 2-2]와 같이 전체시장의 연도별 추이분석 및 점유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자별과 세부수익별 매출액 추이와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수익구조 분석은 통신시장의 수익 및 비용의 추이, 영업이익률, 영업비용 추이 및 마케팅비 및 투자비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2-2] 전체 통신시장의 매출액 추이 및 시장점유율 변화



자료: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팀, “2010년도 통신시장 현황분석”, 3페이지

‘유선시장 현황’은 ‘유선시장 분석’과 ‘서비스별 현황 및 경쟁상황분석’을 수행하고 결론을 맺었다. 유선시장은 KT, SK브로드밴드 및 LGU+ 3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시내, 시외, 국제, 인터넷전화서비스를 포함한 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IPTV 서비스 및 전용회선 서비스의 4개서비스시장으로 정의하였다. 유선시장 분석은 매출 및 점유율 현황, 영업이익현황 및 가입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매출 및 점유율 현황은 유선시장의 사업자별 매출액과 <표 2-11>과 같이 유선시장의 세부시장별 매출액에 의한 사업자별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영업이익현황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영업이익을, 가입자현황은 서비스별 사업별 가입자 수와 점유율을 집계하였다.

〈표 2-11〉 사업자의 서비스별 시장 점유율

(단위: 십억 원)

구분	시내/시외 전화	인터넷 전화	국제 전화	IPTV	초고속 인터넷	전용 회선	합계
KT	86.3%	47.7%	50.2%	47.7%	53.1%	41.2%	61.1%
SK브로드 밴드	10.1%	18.4%	11.9%	31.5%	27.6%	14.7%	17.3%
LGU+	3.5%	34.6%	37.9%	20.8%	19.3%	44.1%	18.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액	3,471	814	633	404	3,578	1,778	10,67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 “2010년도 통신시장 현황분석”, 15페이지

유선시장에 대한 서비스별 현황 및 경쟁상황분석은 시내, 시외, 국제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전화서비스,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IPTV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를 각각 분석하였다. 각 서비스마다 5개년 간의 매출액 추이, 매출액에 기준한 시장점유율, 가입자 증감현황을 정리하고, 5개년 간의 변동율을 적용하여 매출액과 가입자의 점유율을 산정하고 시장을 전망하였다. 각 시장에 대한 분석 후에는 특정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에 의한 허핀달-허쉬만지수로 각 시장에 대한 경쟁정도를 판정하였다. 시내/시외전화서비스 시장이 HHI 지수 7,566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수 4,000을 상회함에 따라 KT가 아직도 독점구조가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선시장 현황’은 통신사업자 SK텔레콤, KT 및 LGU+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시장 분석은 기본적으로 유선시장과 동일하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세부서비스가 없지만, 음성과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요금수익구조분석을 음성과 데이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무선시장의 경우 매출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 기준의 HHI를 산정하였다. 양 지수가 각각 3,977과 3,878로 무선시장은 과점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조사과는 IR분석을 위한 이용 자료로 사업자 IR 자료와 영업보고서, 재산상황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IR자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영업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자료요청이 빈번하여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연도별 보고서 작성 시에 활용이 된다. 회계정보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주요 지표가 생성되나, 아직 시스템이 미완성인 관계로 해당 지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

한 반기 영업보고서는 검증이 되지 않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재산상황자료는 주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시자료 사용하며 특히 방송분야에서 이슈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3. 기타 분석업무

통신시장분석 이외에도 영업보고서의 회계정보를 이용한 시장분석 및 재무회계정보를 이용한 투자보수율 산정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비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주요 이슈에 대하여 국장, 팀장 요구사항에 따라 수시 분석하며, 주요 언론의 기사를 분석 조사하여 수시보고서를 작성하며, 타국 보고도 수행하고 있다. 주로 현안 위주로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매년 초 이슈발굴을 위해 중요 이슈를 키워드로 준비하고 있다. 2010년에는 통신 방송 융합을 키워드로 이슈 준비를 수행한 바가 있다. 이러한 이슈 키워드 발굴은 발생가능한 주요 이슈를 미리 준비하여 세팅하고 위원회에서 이슈 발생 시에 미리 시리즈로 준비하는 능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IR자료 분석 연차보고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키워드를 중점으로 종합 수합하여 정책제언을 수행하고 있다.

영업보고서의 규제회계정보에 기초한 통신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로 '통신시장 분석 보고서', '유선통신시장 현황 분석', '유선통신시장 투자 현황 분석' 등이 있다. 규제회계정보에 의한 통신시장분석이 재무회계정보에 의한 통신시장분석과 다른 점은 역무별로 회계 분리된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시장을 역무별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회계정보는 영업수익을 수입원에 따라 분리하고, 영업비용도 형태별뿐만 아니라 기능별로 회계분리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 분석이 가능하다.

'통신시장 분석 보고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자, 영업수익, 영업비용 및 당기순이익의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가입자현황은 가입자를 갖고 있는 시내전화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GM-PCS서비스로 집계되었다. 영업수익 현황은 <표 2-12>와 같이 '회계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본전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되었다. 영업비용 현황은 회계기준 제9조 제3항 형태별 분류에 의

하여 인건비, 경비, 설비사용료 등으로 구분되어 비용이 집계되었다.

〈표 2-12〉 2009년도 전기통신사업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단위: 억 원)

영업수익	금액	구성 비율	영업비용	금액	구성 비율
요금	333,009	80.52%	인건비	37,440	10.93%
접속료	34,812	7.92%	경비	162,792	47.53%
국제정산	5,564	1.64%	설비사용료	19,861	5.80%
...	
...	
기타영업	2,945	0.88%	자가소비	3,822	1.12%
합계	393,807	100%	합계	342,516	100%

자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 “통신시장 분석 보고서”, 9페이지, 33페이지(2010. 9)

보고서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시장 전체와 역무별 현황을 사업자별로 분석하였다. 전체시장의 경우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별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중요한 세부 역무별 혹은 서비스별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분석하였다.

수시 과제 중 일부로 수행된 ‘유선시장 투자 현황분석’ 과제는 판매비 증가에 의한 유선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망투자에 의한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유선통신시장 투자 현황을 분석하게 되었다. 유선통신을 제공함에 필요한 유선통신설비는 유선통신 뿐만 아니라 무선통신에도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유선통신시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마케팅 위주의 경쟁이 투자위축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투자분석 현황분석을 위하여 영업보고서 상의 취득가액 증감금액,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예산투자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보고서는 KT, LGU+, SK브로드밴드의 투자현황을 4개년에 걸친 투자 추세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관측비와 투자비를 비교하였다. 보고서는 “유선통신사업자들의 설비 투자 대비 관측비 지출이 높아 통신산업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측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설비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 4 절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

1. 시장분석기능 강화의 의미

방송통신 시장분석을 담당하는 시장분석팀은 시장분석 뿐만 아니라 회계검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분석팀은 제2장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방송시장 분석으로 '재산상황 공표' 보고서와 '경영분석' 보고서를 출간한다. 동 보고서는 방송사업자들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주로 방송시장의 손익현황을 분석한다. 통신시장의 분석은 제2장 제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분석팀이 사업자가 분기별로 발표되는 IR자료를 재편집하여 사업자별 영업실적보고서, 분기별 통신시장 영업실적, 연도별 통신시장 현황분석을 발간한다.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이전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시장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첫째, 방송통신사업자와 방송시장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인력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분석결과에 대한 활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직제규정에 의해 주어진 업무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경영분석,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의 분석이다. 현재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무측면의 분석은 수행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에 대한 분석은 규제측면에서 단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재무적 측면의 분석은 아직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 방안은 현재 수행하는 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완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장기적인 방안은 현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인 방안은 연구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업무 기능을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협의체 구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아닌 시장분석팀은 직제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기초적이고 단순한 시장분석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시장분석정보의 내용은 규제정책을 위한 정보이기 보다는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재무정보에

가깝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재무비율분석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유용한 정보는 아니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정책부서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없는 지원 부서가 규제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중복된 혹은 유용하지 못한 정보를 생산하기 쉽다. 또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정보생산 과정에 재투입하지 못하면 보다 나은 회계정보를 재생산할 수 없다. 즉, 정보의 소비가 없는 정보의 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보의 소비를 위해서 정보이용자와 정보생산자는 서로 소통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실과 국을 대표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연구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비록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무정보에 의한 시장분석업무가 적절한 업무범위라고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의체는 시장분석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규제정책에 유용한 재무회계정보를 발굴하여야 하며, 정책집행과 정보생산과정에 대하여 협의체는 공동으로 이해를 함께 하여야 한다. 현재 시장분석업무의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범위에 대한 논의와 유용한 정보의 확인과 생산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3. 내재화를 위한 연구인력 강화

연구인력 강화 방안을 2가지 측면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시장분석팀 연구원의 정규직화이다. 시장분석팀 연구원들은 신분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직율이 높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연구인력의 보강이다. 연구원 4명을 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석을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원 보강은 시장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연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충원은 국가예산과 관련되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사료된다. 때문에 분석업무의 내재화하고, 시장분석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구인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철저한 위탁연구용역 관리

시장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인력을 단기간 강화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연구인력강화

보다는 가상적인 연구인력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상적인 연구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아닌 다른 조직의 인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가능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방송사업자와 방송사업에 대한 시장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분석이 대부분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재무정보를 이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시장업무의 분석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요구되는 분석은 아니다.³⁾ 또한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 사업을 매년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연구결과인 시장분석의 계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무측면의 시장분석뿐만 아니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측면에서의 시장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정책에 전문성을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장기간 위탁하여 수행하고 협의체를 통하여 연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장분석 시스템 고도화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보고서를 회계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회계정보 분석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2-3]과 같이 <http://fias.kcc.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사용자ID로 사용)와 법인용공인인증서(인증서PW로 사용)를 이용하여 양식업로드방식과 화면직접입력방식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재무회계정보보다 정책 결정에 보다 유용한 규제회계정보이다. 예를 들면, 사업자의 서비스별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매출액은 세부매출액으로 구분되며, 영업비용은 형태별·기능별 항목별로 살펴볼 수 있다.

3) 방송사업자와 방송사업 경영분석에 주요한 결과를 산출하는 재무분석비율을 별첨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분석방법은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림 2-3]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 정보 분석시스템 접속화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홈페이지(<https://fias.kcc.go.kr>)

통신시장에 대한 분석은 사업자의 IR자료뿐만 아니라 회계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규정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회계정보는 사업자가 제출한 원시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정보는 정책목적에 따라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하여야 한다. 연구협의체를 통하여 통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회계정보를 분류하고, 규제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생산된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원시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생산된 가공된 세분화된 정보를 위원회에 공개하여 정책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정보를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가 담당 정책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재가공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개요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필요성

전기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자연독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장실패의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산업을 규제산업으로 분류하고 각종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다.

규제기관이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원가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정보는 기업 전체의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세부 기능별 혹은 의무별 회계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원활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의무별 세부원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만들었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업회계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에는 회계분리(accounting separation) 제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회계분리란 기업의 자산, 수익, 비용을 일정한 배부 기준을 적용하여 기능별, 의무별, 서비스별로 나누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능/의무/서비스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이나 원가는 그 기능/의무/서비스에 직접 할당하고, 공통자산과 공통원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배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회계분리 과정을 거치면 발생한 모든 원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의무별로 분리되어 별개의 기업이 각각의 의무를 제공하는 것처럼 영업보고서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영업보고서는 공정경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다양한 통신정책 수립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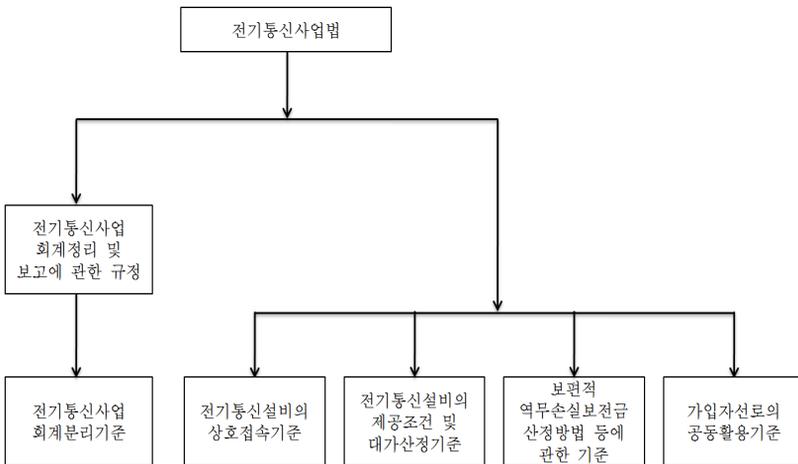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의 규제회계 정보는 원가 이전을 통한 상호 보조를 방지하고, 상호접속, 보편서비스, 설비제공 등과 관련한 원가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2. 규제제도와 규제회계정보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법적 체계는 [그림 3-1]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회계규정, 회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계규정은 1994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계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회계규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3-1]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법적 체계



자료: 합창용 외(2008)

또한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통신정책과 관련된 기준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보편적 역

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기준'이 있으며, 각 기준은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이 산출하는 규제회계정보를 기초로 각 기준이 지향하는 정책 집행을 위한 이차적인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입하고 있는 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업자 통신망 간의 상호 접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신망 간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이란 서로 다른 통신망 이용자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교환기, 접속회선 등의 통신 설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의 망과 KT의 망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접속에서 통신사업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접속요율이다.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통신요금은 SK텔레콤이 받지만 통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KT의 통신망도 사용하였기 때문에 SK텔레콤은 KT에 접속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⁴⁾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은 매년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를 산정하여 접속료를 지불한다. 접속료 산정의 세부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사업자의 원가와 주파수 효율차이, 통화량 규모 등의 특성,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나와 있다.

상호접속기준은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할 때 적용되는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원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속설비비 중 접속회선비용은 원칙적으로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하고,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원칙적으로 설비개조를 요청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접속통화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접속통화료는 기본적으로 접속통화량에 접속통화요

4) L-M(Land to Mobile) 접속료는 유선전화에서 무선이동전화로 통화하는 경우 지불하는 금액이고, M-L(Mobile to Land) 접속료는 그 반대이며, M-M(Mobile to Mobile) 접속료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사업자의 번호로 통화를 할 때 적용하는 금액이다.

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접속통화량의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화량의 산정은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가중하여 교환, 전송 및 선로(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구분한다) 등 설비별로 산정한다. 각 사업자가 일차적으로 산정한 통화량은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매 분기 검증하고 있다. 한편, 접속통화요율은 상호접속 기준에서 정하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접속에 제공된 설비별로 분 단위로 계산한다.

상호접속기준에서는 접속원가의 계산 방식으로 장기증분원가(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증분원가는 경쟁자에게 접속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해서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기존 사업자의 총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기'의 의미는 모든 원가가 변동원가가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접속원가 계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영업보고서의 회계자료를 이용한다. 이 때 접속원가계산에 포함되는 원가의 범위는 접속영업비용과 투자보수이다. 접속영업비용은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무별 및 서비스별로 분류된 영업비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한편 투자보수는 연평균 고정자산, 재고자산, 임차보증금, 적정운전자본의 합으로 계산되는 투자보수 기준자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접속에 따른 법인세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각 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계산한 접속원가는 관련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접속원가 뿐만 아니라 회계적 장기증분원가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가에 의한 접속원가 계산 결과도 참고한다. 회계적(Top-Down) 장기증분원가란 사업자의 회계정보를 기초로 산정된 장기증분원가를 말하며, 공학적(Bottom-up) 장기증분원가는 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상의 효율적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장기증분원가를 말한다. 현재 회계적 장기증분원가 계산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계산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케이블이나 국사 등의 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 등이 보유한 여유 설비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설비의 범위, 제공조건, 절차, 방법, 대가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제3항 및 제7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이하 '설비제공기준')을 제정하여 설비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설비제공과 관련된 이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설비 제공 기관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원가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설비 제공기준은 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몇몇 설비를 '의무제공대상설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의무제공기관의 설비 등의 설치 상 특성을 반영한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원가계산(Standard Cost Accounting)이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용대가는 상호 협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의 이용자는 원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당해 이용대가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2010년 12월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비제공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로 지정하고 설비제공과 관련된 통계관리 및 전산화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보편적 의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보편적 의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의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 의무의 내용과 보편적 의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편적 의무의 내용은 전기통신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선전화, 긴급통신용(112, 119 등) 전화서비스,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유선전화는 시내전화서비스, 시내공중전화서비스, 도서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며,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에 해당하는 전화서비스를 일컫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의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정할 수 있다. 이후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해당 역무 제공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에 따라 분담시키고 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 받으려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역무의 범위는 시내전화서비스 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전화서비스, 혹은 시내공중전화서비스 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공중전화서비스, 도서통신 서비스, 선박무선전화서비스이다.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의 범위는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른 영업비용(판매촉진비 제외),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기준자산에 대한 투자보수로 한다.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수입은 총 매출액으로 한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방법은 시내전화의 경우 비용·수입 비율이 110%이상인 지역의 손실금(수입-비용)에서 무형의 편익을 10% 반영하여 차감한 금액을 최종손실금으로 산정하고, 손실금의 70%를 보전한다. 시내공중전화는 비용·수입 비율이 130%이상인 지역의 손실금(수익-비용)에서 무형의 편익을 30% 반영하여 차감한 금액을 최종손실금으로 산정하고, 손실금의 90%를 보전한다. 선박무선 손실금 산정은 경영효율화 목표치를 반영하여 손실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긴급통신·복지통신 손실보전금의 경우는 산정 의무만 부여하고 비용보전은 없다.⁵⁾

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기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기준’은 가입자측 선로가 부착된 단자 또는 초고속 인터넷용 모뎀

5) 도서통신은 무선전송구간의 비용만을 소요 비용으로 간주하여 손실금을 산정하고 있다. 도서통신의 경우 2008년까지는 별도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구성하였지만, 2008년 12월 17일에 도서통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서비스에 포함시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국내 가입자측 최초 단자를 연결하여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는 선로를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선로의 범위, 공동 활용의 범위·조건·절차·방법·대가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에 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공동활용방식에는 일괄제공,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을 포함한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우선, 일괄제공의 경우 제공사업자는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를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일괄제공구간은 제공사업자의 시내교환 주회선분배반(MDF)의 가입자측 단자로부터 가입자측 분계점까지로 구분한다. 두 번째,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의 경우 사업자는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를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허가받고,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고주파수회선의 제공구간은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내 스플리터 장치로부터 가입자측 분계점까지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의 경우 제공사업자는 매년도 1월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의 유형별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이어야 하며, 이용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공동 활용 대상은 xDSL과 HFC이며, 접속 및 분계점은 xDSL의 경우 제공사업자의 DSLAM 또는 ATM 후단, HFC의 경우는 제공사업자의 라우터 후단으로 구분한다.

동선 일괄제공의 대가산정 및 정산을 위한 이용대가는 전국단일대가로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기준' 제32조부터 제52조까지는 표준원가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선의 이용대가는 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별 이용대가를 통화권별 인구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화국별 이용대가는 월별로 계산하며, 가입자망 재설계에 따라 산출된 연간 원가를 가입자 수로 나누어 회선당 이용대가를 계산한다. 이용대가 산정에 사용되는 연간 원가는 자본비용(연간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및 운영비용(가입자선로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 중 가입자 선로관련비용, 관리비 중 가입자선로 관련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동선 일괄제공 투자보수는 기준투자액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고주파수회선의 분리제공대가는 동선 일괄제공대가의 50%로 산정하며 초고속인터넷접속망 대가는 xDSL 및 HFC 개방방식을 통해 모집된 가입자가 납부하는 xDSL 및 HFC 요금의 징수주체는 제공사업자로 하고, 제공사업자는 납부된 요금 중 10%를 이용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이용사업자는 자사의 전기통신설비와 제공사업자의 설비간 연동을 위해 구성되는 회선비용을 부담한다.

3. 회계규정과 회계기준

가. 회계규정의 연혁

회계규칙은 1994년 8월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최초 제정 시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를 제도화하고,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였다. 1996년 1차 개정 시에는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역무별 분류 내용이 '회계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입되었고, 회계분리대상 역무 수가 8개에서 7개로 변경되었다. 또한 내부거래제도를 도입하여 내부거래수익은 영업수익으로 내부거래비용은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였고, 지역별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1년 2차 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목적이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이라는 것을 명시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역무 수를 4개로 축소하였다. 또한 미사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재정의하여 사용한 자산과 미사용한 자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2005년 3차 개정에서는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기관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통통신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무형자산의 분류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접속역무와 인터넷전화역무를 새로운 역무로 추가함에 따라 회계분리대상 역무는 총 6개가 되었다. 2007년 4차 개정에서는 영업수익, 비용 등의 분류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수익과 비용의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였다.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을 개선하고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를 6개에서 4개로 축소했으며, 정보처리설비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2008년 2월 말에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이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63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0년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⁶⁾됨에 따라, 2010년 10월 회계규정도 개정되었다. 2010년 5차

6)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은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정에서는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표 3-1〉 회계규정 제·개정 연혁

시기	제·개정	제정 및 개정 내용
1994년 8월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분리의 제도화: 통신업무 간 회계분리 •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 • 총칙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
1996년 5월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역무별 분류 내용이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임 • 회계분리대상 역무를 8개에서 7개로 변경 • 내부거래제도 도입으로 내부거래수익 → 영업수익, 내부거래비용 → 영업비용으로 인식 • 지역별 회계분리제도 도입
2001년 3월	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목적을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으로 명시 • 7개 역무를 4개로 바꿈 • 사용/미사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개념 명확화
2005년 12월	3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기관이 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 • 무형자산 분류의 변경 • 인터넷접속역무 및 인터넷전화역무 추가
2007년 11월	4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수익, 비용 등의 분류 개정 및 신설 •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및 대상 역무 개정(6개 역무에서 4개 역무로 축소) •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2008년 2월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법령 재고시(내용은 기존 법령과 동일)
2010년 10월	5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업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 • 기간통신 업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기준 마련 •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 •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자료: 합창용 외(2008) 수정 및 추가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회계기준의 연혁

회계기준은 1996년 6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20개의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및 내부거래가격,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등을 규정하였다. 2001년 1차 개정 시에는 회계규칙 2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확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판매 촉진비 상한에 관한 규정들이 추가되었다. 2005년 1월 2차 개정 시에는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역무를 추가하고,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를 일부 수정하였다. 동년 12월에는 회계규칙 개정사항들을 반영하여 회계기준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12월의 4차 개정 시에는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가 추가되었고,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와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7년 12월 회계기준 5차 개정에서는 역무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가 개정되어 별정통신역무가 삭제되었고,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와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 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이 신설되었으며,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공통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별지 서식 수정 등 광범위한 범위의 회계기준 개선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8년 5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으로 용어 변경이 있었다. 2009년 12월에는 6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6차 개정에서는 영업권 인식 범위의 명확화, 내부거래 대가의 신설, 결합판매 수익 및 비용 배부기준의 세분화, 콜센터 비용의 별도 표시, 전송 및 선로운영 공통비 배부기준 변경, 관촉비 배부 기준의 변경, 전송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기준 신설, 지역별 회계분리 삭제, 영업보고서의 경영자 책임 표시 신설, 별지 서식의 추가 등이 있었다. 2010년 11월 7차 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의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신단말장치 구입 지원 비용 집계와 관련된 비현행화된 조항을 삭제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기업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이 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됨에 따라 8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은 K-IFRS를 반영하여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다른 규정들은 K-IFRS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들을 유지하였다. 회계고시는 현행 개별재무제표 방식을 유지함을 명시하였고, 사업자별 원가의 객관적 비교를 위하여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금지하였고, 감가상각방식도 현행 방법을 유지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표 3-2〉 회계기준 제·개정 연혁

시기	제·개정	제정 및 개정 내용
1996년 6월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서비스 도입으로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로 규정 • 내부거래가격의 제정 •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2001년 3월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규칙 개정 사항의 반영 •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에서 27개로 확대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규정 •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 추가
2005년 1월	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역무 추가 •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일부 수정
2005년 12월	3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규칙 개정 사항의 반영
2006년 12월	4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 추가 •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조항 신설 •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 신설
2007년 12월	5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 개정(별정통신역무 분류 삭제) •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신설 •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 신설 •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 공통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 별지서식 수정
2009년 12월	6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권인식 범위의 변경 • 내부거래 대가의 신설 • 결합판매 수익 및 비용 배부기준의 세분화 • 콜센터 비용의 별도 표시 • 전송 및 선로운영 공통비 배부기준 변경 • 판촉비 배부기준의 변경 • 전송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기준 신설 • 지역별 회계분리 삭제 • 영업보고서의 경영자 책임 표시 및 별지서식(제10-2호) 신설

시기	제·개정	제정 및 개정 내용
2010년 11월	7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의 인용 조문 변경 • 통신단말장치 구입 지원 비용 집계와 관련된 조항 삭제
2010년 12월	8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 • 개별재무제표 방식 유지 • 유형자산의 재평가 금지, 감가상각방식 현행 유지 •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 명시

자료: 함창용 외(2008) 수정 및 추가

다. 회계규정의 주요내용

회계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하여야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틀을 제시하고, 대차대조표⁷⁾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규정은 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역무별 회계분리, 보칙의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목적,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영업보고서의 종류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2장 대차대조표에서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구성, 통신설비의 분류 및 정의,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건설 중인 자산과 무형자산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세부항목을 정의하고 있고, 더불어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에서는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과 역무의 분류,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및 전국 사업자의 지역별 회계분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5장 보칙에서는 영업보고서 제출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보고서 검증을 위한 분리지침서 및 관련 회계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차대조표와 관련하여서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설비와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산으로 구분한 후 교환, 전송, 선로, 단말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원자산의 분류와 무형자산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서

7)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회계기준은 2010년 12월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회계규정은 2011년 5월 현재 아직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음

는 통신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영업수익을 상세하게 표시하게 하고 있다.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등이 영업수익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또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엄격히 구분하고 그 세부항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라. 회계기준 주요내용

회계기준은 회계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무별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기준은 총칙,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 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등, 의무별 회계분리, 의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보칙의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⁸⁾에는 회계기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와 세부 의무의 정의, 회계분리의 절차 및 회계정리단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2장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에는 유형자산,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등의 취득 및 감가상각방법, 내부거래와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결합판매수익의 분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3장 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등에는 전기통신설비의 기능 및 세부분류,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기능공동자산 및 공동비의 분류기준 및 배부,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미사용공동자산 등의 분류에 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 의무별 회계분리에서는 비용과 자산의 의무별 회계분리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고, 총괄원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의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및 유형자산의 지역별 분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6장 보칙은 배부기준의 적용,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제출과 검증에 관한 사항,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업자의 회계 관련 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항, 통계의 보고 및 보고서 등의 공개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4. 회계분리지침서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정의는 회계기준 제41조에서 해당년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8) 회계기준에는 '제1장 총칙'이라는 명칭이 빠져있으나, 구성상 제1장이 총칙에 해당함

은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지만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기통신사업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회계기준 제41조는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회계분리지침서에 명시해 놓도록 하였다. 회계분리지침서는 각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기관별 배부방법, 자산등의 배부기준, 자산등의 분류방법, 배부기준 변경 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회계기준 제41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을 명 받은 사업자는 해당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보고서 제출 기한 3개월 전까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수정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면 회계분리지침서가 확정된다.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과 확정 절차는 [그림 3-2]와 같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A통신사의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을 2011년 4월에 A통신사에 명하면 A통신사는 2011년도 6월말까지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계분리지침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말 까지 수정을 요구하고 A통신사는 최종 수정 요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인 2012년 1월말까지 수정사항을 반영한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여 회계분리지침서를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2012년 3월말에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 시에 2012년 1월말에 확정된 회계분리지침서를 다시 제출하고 검증을 받게 된다.

[그림 3-2]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및 확정 절차 예시



그러나 위와 같은 회계분리지침서 제출과 검토의 절차는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시에는 위의 절차 없이 영업보고서 검증 시에 검증 회계법인이 회계분리지침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영업보고서 검증보고서에 표시하였고,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2011년 6월 이전에 제출을 명하고 6월 말까지 제출이 이루어져 12월까지 검토를 하여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2 절 회계처리 질의 · 회신 절차

1.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 · 회신 절차⁹⁾

가. 개요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하여 기업회계 기준 및 준칙,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이하 포괄적인 의미의 ‘기업회계 기준’이라 함)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질의회신업무는 주식회사의

[그림 3-3]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화면



자료: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9)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참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다. 기준 원은 위탁업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질의회신을 [그림 3-3]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질의회신은 특정 회계 사안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의결되는 기업회계기준과는 구분된다. 질의회신 중 일반적인 회계실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준해석사례로 <표 3-3>과 같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표 3-3> 자회사와의 자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I.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A은행의 일본현지법인 자회사인 AJ은행과의 자금거래 내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AJ는 현지 고객예수금을 통해 조달한 엔화자금의 일정부분을 A은행에 운용하고 있으며, 동 거래에 대해 AJ는 '정기예치금'으로, A은행은 '외화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행한 예금증서나 예금계좌번호는 없고, 자금거래 시 Swift 전문을 수령하고 확인 Swift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AJ에서 예치금으로 분류한 거래에 대해 A은행이 차입부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갑설) 거래 상대방(AJ)의 분류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자금을 수취한 은행(A은행)이 해당 거래의 실질을 보아 차입부채로 회계처리함.

(을설) 실질이 하나인 단일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AJ)이 예치금으로 분류한 것이 적정하다면, 자금을 수취한 은행(A은행)은 예수부채로 회계처리 하여야함. 즉, AJ가 대출금(대여금)으로 분류한 경우에만, A은행은 차입부채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II. 회신 내용

거래상대방의 회계처리와는 관계없이 귀사의 유사한 다른 거래의 회계처리와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문단 17에 따라 동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로 판단된다면, 차입부채로 분류합니다.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자회사와의 자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2011. 3. 31

나. 질의 양식과 질의·회신 절차

질의·회신 방법은 <표 3-4>와 같이 인터넷 Q&A와 서면질의를 통하여 시행된다. 첫 번째 방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의 인터넷 질의회신 Q&A 게시판을 통한 질의 방법은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다. 인터넷을 통한 질의·회신의 경우는 특별한 절차 및 양식이 없다. 질의를 원하는 사용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질의양식을 정식으로 갖추어 질의하는 방법으로 우편, Fax 또는 e-mail 등으로 할 수 있다. E-mail 또는 Fax를 이용한 경우 질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표 3-4>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방법

방식	항목
1. 인터넷 Q&A 게시판	1)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질의 2) 절차 및 양식 없음 3) 법적효력 없음
2. 질의양식을 갖춘 서면질의	1) 절차 및 양식 있음 2) 법적효력 있음

자료: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질의양식을 갖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질의자는 <표 3-5>의 질의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자는 성명,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의 주소,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질의내용은 질의대상의 회계거래·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과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 중 회신이 필요한 특정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ex. 거래시점, 거래이후의 인식시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을 기술할 때에는 적용할 기업회계기준(ex. 기업회계기준 xx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xx)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대안(ex. 갑설, 을설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질의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할 때에는 지지하는 대안(ex. 갑설)과 지지하는 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 3-5〉 한국회계기준원 질의양식

1. 성명,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의 주소, e-mail 주소			
성명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의 주소		우편번호	
e-mail 주소			
2. 질의내용			
3.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			
4. “3.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기업의 질의인 경우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을, 회계법인의 질의인 경우 내부심리실 및 담당 이사공인회계사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5. 외부감사인명(또는 질의대상회사명) 기업의 질의인 경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실명을, 회계법인의 질의인 경우 질의대상회사의 실명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료: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그러므로 질의자는 사전에 질의 문제에 적용할 기업회계기준과 회계처리대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상급회계담당자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대안, 외부감사인의 검토내용을 질의양식에 포함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 질의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회계법인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담당 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질의양식을 최종 작성하여 한국회계기준에 질의를 하면, 한국회계기준원은 [그림 3-4]와 같이 기업회계기준 등의 내용 및 실무상 적용과 관련된 외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원 내에 5인 이내로 구성된 질의회신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실무위원회는 질의회신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이 검토 후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기준원장의 확정하면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만약, 질의내용이 특히 중대한 사안이거나 실무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 3-4]와 같이 기준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준위 상임위원과 2인의 질의회신담당 수석연구원 외에 기준원장이 위촉하는 4인의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질의회신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질의회신위원회는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원장이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림 3-4]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절차



자료: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참고

다. 회신 기간과 질의서 반려

질의서는 접수일의 익일부터 2주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주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회신기한 연장 사실을 질의자에게 통지한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자료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간주한다.

질의서가 질의양식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의 내용이 질의응답업무의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질의자가 자료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된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질의서의 내용이 공인회계사의 일반적인 회계서비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질의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 또는 접수 후에 반려할 수 있다. 또한 질의자의 신원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준원의 답변거부는 기준원이 특정 거래 및 사건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은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사실판단은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경영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적절한 감사 절차에 따라 경영자의 주장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사실판단에 대해 회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도 이를 중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외부감사인, 기업과 감독기관 등과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결될 사항이므로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중재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표 3-6>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다.

<표 3-6>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항목

구 분	항 목
질의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절차, 감사보고서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문제 •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공시 등에 관련된 법규에 관한 문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와 관련된 문제 • 소송사건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 교육 및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제 • 특정 세부 사항의 판단이 필요한 회계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질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이와 더불어 한국회계기준원은 질의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서 또는 관련 문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질의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또는 관련 문건을 반드시 검토할 의무는 없다.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다.

2.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절차¹⁰⁾

한국회계기준원과 유사하게 금융감독원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방법은 한국회계기준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회계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포털내의 질의회신 Q&A 게시판을 통한 질의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 없고, 금융회사와의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법규 문의 등 단순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다. 인터넷을 통한 질의·회신의 경우 특별한 절차 및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질의를 원하는 사용자는 [그림 3-5]의 금융감독원의 회계포털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 있다.

[그림 3-5]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화면



자료: 금융감독원 회계포털(<http://acct.fss.or.kr/>)

두 번째, 서면질의회신의 경우는 사안이 중대하여 담당자의 회신검토에 대하여 자문교수가 참여하는 질의회신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서면 질의회신의 경우 질의회신 담당자가 검토한 내용을 2인의 자문교수가 참석하는 질의회신회의를 주당 1회 이상 개최하여 회의 결과를 토대로 민원인에게 <표 3-7>과 같이 회

10) 금융감독원 회계포털(<http://acct.fss.or.kr/>) 참고

신하고 있으나 질의회신 회의시 논란이 있었거나 고도의 회계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학계 및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실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 회계간담회를 거쳐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다.

〈표 3-7〉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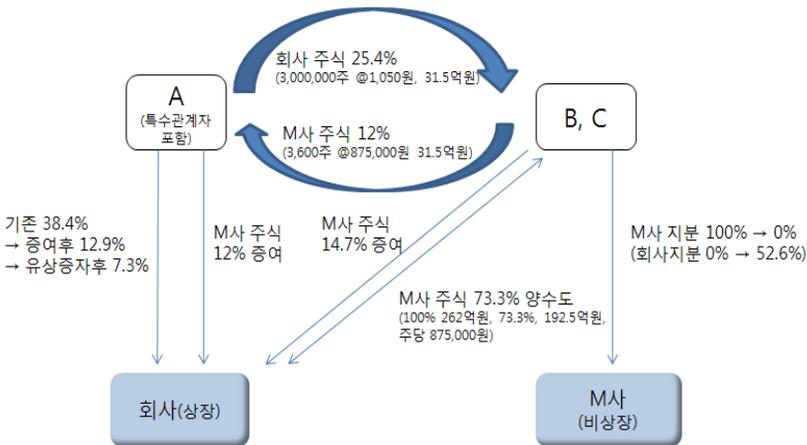
방식	항목
1. 인터넷 Q&A 게시판	1)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질의 2) 절차 및 양식 없음 3) 법적효력 없음
2. 서면 질의	1) 절차 및 양식 있음 2) 법적효력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참고

〈표 3-8〉 주식 증여 및 매매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코스닥상장)는 M사(비상장)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 A 및 M사 주주 B, C로부터 M사 주식 일부를 증여받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취득
 - A는 B, C에 회사 주식 25.4%를 양도하는 대가로 M사 주식 12%를 취득한 후 이를 회사에 증여하고 B, C도 M사 주식 14.7%를 회사에 증여
 - 증여 직전 회사는 M사 주식 73.3%를 192.5억 원에 취득하기로 B, C와 계약



(질의) 동 거래에서 회사의 증여받은 주식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회사가 일부 M사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은 M사주식의 유상취득과 결부되어 있어 경제적 실질상 회사가 지불하는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상취득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다만, 주주의 회사에 대한 M사주식 증여와 회사의 M사주식 취득이 독립적인 거래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는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액을 이익으로 인식, 이 경우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교환가격임
-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두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상이한 회신과 같은 중복성 문제를 피하고자 기존 GAAP하에서 양 기관이 수시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행 IFRS 환경 하에서도 계속해서 양 기관간의 협의 및 회의를 바탕으로 중복성 문제를 피하고 있다. 일관된 기준집행을 위해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전기통신회계의 질의·회신 절차

현재 전기통신회계 분야에서는 특별한 질의·회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와 유사한 '회계기준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유권해석이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신인 정보통신부 산하의 규제감독 기구인 통신위원회에서는 '회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회계전문위원회의 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구속력 있는 해석이었다. 이와 같은 회계전문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통신위원회의 영업보고서 검증시에 사업자간의 분쟁, 혹은 감사인과 피감사인 간의 이견이 존재할 때 중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회계전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얻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영업보고서 검증시 회계법인이 특정사안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거나 피감사인과 마찰이 있다고 회계전문위원회에 알려오면 회계전문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었다.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기준 제44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르면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고시가 있지만 관련 법령은 현재 없다. 따라서 2008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되면서 회계전문위원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 회계전문위원회의 역할은 '회계자문단'에게 이관되었다. 현재 회계자문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과거 회계전문위원회와는 다르게 유권해석에 대한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며 특정사안에 대한 자문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제 3 절 사후적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1. 영업보고서 검증 현황

영업보고서 검증은 1997회계연도 검증까지는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였고, 1998회계연도 검증부터는 정보통신부가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고 있다. 1998~2004회계연도 검증은 <표 3-9>와 같이 전체 검증대상사업자를 하나의 검증 법인에서 담당하였고 2005~2010회계연도 검증은 검증 대상 사업자를 3~4개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의 회계법인이 하나의 그룹을 담당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의 경우, 검증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15개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별도의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2010회계연도의 경우 접속원가검증 대상사업자를 A그룹, A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를 B그룹, SO사업자를 C그룹으로 나누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 1일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2010회계 연도 통신 및 IPTV사업자 회계검증 용역 계약'에 관한 공고를 하여 3개의 회계법인을 상기 그룹별 검증회계법인으로 지정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회계전문위원회는 선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계획서 및 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고 검토하게 된다. 회계법인은 보통 4~9월까지 현장 검증을 실시하게 되는데, 2010회계 연도 영업보고서 검증은 입찰 공고가 6월에 공고되어 현장 검증은 7월부터 진행되었다. 현장검증기간에는 각 회사의 영업보고서가 회계규정, 회계기준, 회계분리지침서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검증 후에는 회계법인이 검증결과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검증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표 3-9〉 연도별 검증대상사업자 및 검증회계법인

회계연도	검증대상사업자	검증회계법인
1998	KT,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데이콤, 한솔엠닷컴, 나래이동통신	영화
1999	KT,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데이콤, 한솔엠닷컴, 온세통신, 신세기통신, 두루넷	대주
2000	KT,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온세통신, 드림라인, 신세기통신, 두루넷	대주
2001	KT,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신세기통신, 두루넷	대주
2002	KT,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드림라인	대주
2003	KT,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대주
2004	KT,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삼성네트웍스, SK네트웍스, SK텔링크, 드림라인, KT파워텔	삼덕
2005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삼덕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온세통신	한영
	드림라인, KT파워텔, SK텔링크, SK네트웍스, 삼성네트웍스,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에어미디어	화인경영
2006	KT,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삼성네트웍스, SK네트웍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드림라인, CJ케이블넷, KT파워텔,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드림씨티방송, GS강남방송, 씨앤앰커뮤니케이션, 티브로드한빛방송, 남인천방송	대주
2007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대주
	SK텔레콤, 케이티프리텔, LG텔레콤	삼덕
	SK네트웍스, 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SK텔링크, KT파워텔, 세종텔레콤, CJ케이블넷, 드림씨티방송, 씨앤앰	화인경영
2008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대주
	SK텔레콤, 케이티프리텔, LG텔레콤	삼덕
	LG파워콤, SK네트웍스, KT파워텔, 온세텔레콤, SK텔링크, 삼성네트웍스, 세종텔레콤	화인경영
	드림라인, 씨앤앰, CJ헬로비전, 티브로드한빛방송, CJ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ABC방송	지평

회계연도	검증대상사업자	검증회계법인
2009	KT, KT파워텔	대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SK텔링크, 세종텔레콤	삼덕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대명
	CJ헬로비전, 큐릭스,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씨엔엠,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한국케이블텔레콤, 티브로드기남방송	신화
2010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덕
	SK브로드밴드, 삼성SDS,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KT파워텔	대주
	CJ헬로비전,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씨엔엠, 한국케이블텔레콤,	대명

2. 영업보고서 검증체계 개선방안

가. 검증대상 사업자

회계규정 제1조(목적)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계규정, 회계기준 및 회계분리지침서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중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경우 약식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는 어떤 형태이든지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영업보고서를 검증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회계기준 제43조(보고서의 검증등)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계분리지침서 검토 및 영업보고서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검증을 받은 사업자의 수를 보면 2008회계연도 21개사, 2009회계연도 21개사, 2010회계연도 15개사이다. 영업보고서의 목적은 회계규정 제3조에 의하면 역무의 원가산정, 상호접속료 등 규제정책과 관련된 유용한 원가정보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굳이 검증할 필요가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에 검증을 거친 사업자의 원가정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를 정하여 검증대상사업자

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통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만을 검증하는 것도 방안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KT, SK텔레콤, LGU+, SK브로드밴드가 전체 통신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의 전기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케이블 사업자들의 전기통신시장점유율은 미비하기 때문에 검증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검증대상사업자 수를 규제정책 연관성과 관련하여 제한하고, 또한 검증내용을 조정함으로써 검증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다.

나. 검증기관선정

검증대상 사업자 수가 적지 않은 관계로 영업보고서 검증은 해마다 3~4개의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3년의 검증기관을 보면 2008년에는 대주, 삼덕, 화인경영, 지평이, 2009년에는 대주, 삼덕, 대명, 신화가, 2010년에는 대주, 삼덕, 대명이 영업보고서 검증을 담당하였다. 입찰 결과에 따라 검증 기관이 계속 바뀔에 따라 피검증기관도 매년 다른 검증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SK텔레콤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동일한 회계법인이로부터 검증을 받았지만, KT의 영업보고서는 2008년과 2009년에는 대주 회계법인인, 2010년에는 삼덕 회계법인이 검증하였다. LGU+의 영업보고서는 2008년에는 삼덕 회계법인인, 2009년에는 대명 회계법인, 2010년에는 삼덕 회계법인이 검증하였다. CJ 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엠도 2008년에는 지평 회계법인인, 2009년에는 신화 회계법인인, 2010년에는 대명 회계법인이 검증하는 등 매년 검증 기관이 바뀌었다.

영업보고서 검증 작업을 통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통신사업자의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 등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 외에도 통신 설비와 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유형에 대한 이해, 통신사업자의 회계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영업보고서 검증 시스템은 매년 입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검증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입찰을 통한 검증 기관의 선정 방식은 검증 기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검증 기관에 고착화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검증 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어려워 효율적인 검증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영업보고서 검증을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검증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검증 기관의 일

원화가 필요하다. 방통위 산하 검증센터를 두고 전문인력을 운영한다면,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내부인력으로 해마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다. 검증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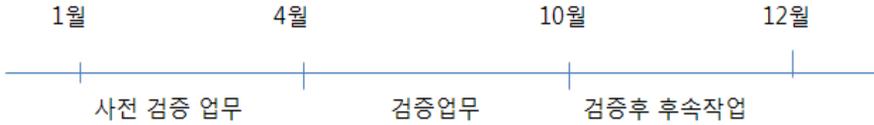
현행 영업보고서 검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용역 공고를 내고 입찰을 통하여 검증을 수행할 회계법인을 정하고 이 회계법인이 계약일부터 12월말까지 검증을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회계법인 지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지정이 늦어지게 되어 실제 검증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2010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 용역의 경우, 2011년 6월 1일에 공고를 내고 6월 한달동안 입찰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검증은 7월부터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1년 3월 말에 영업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대 9개월 까지 검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검증 기간은 6개월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증 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검증 결과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회계기준 제42조(보고서 제출)는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검증업무가 영업보고서 제출 후 4월부터 수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업보고서 검증기간이 길면 길수록 검증에 대한 질은 높아지기 때문에 검증기관을 4월 이전에 선정하여 사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검증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자고 하는 개선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검증절차를 살펴보면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선정하여 회계연도시작과 함께 검증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검증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림 3-6)에서 관찰하면, 검증업무는 사전 검증업무, 검증업무, 검증후 후속작업으로 구분된다. 실질적인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 검증절차는 영업보고서 제출과는 관계없이 미리 수행할 수가 있다. 영업보고서 검증은 회계규정, 회계기준 및 회계분리지침서에 의하여 영업보고서가 작성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보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검증기관이 사전검증인 회계규정, 회계기준 및 회계분리지침서를 이해하고, 동시에 제3장 제4절 '4.회계분리지침서 검토 강화' 방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분리지침서 검토에 참여함으로써 검증대상사업자를 이해하고 통신원가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검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며, 검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검증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6] 검증 업무 진행 과정



3. 회계위반 과징금 제도

가. 과징금 제도 도입 배경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는 필수적이다. 특히 회계정보는 접속료 산정이나 도매제공 대가 등 각종 대가 산정을 위한 과정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회계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경쟁 및 시장 환경이 복잡화됨에 따라 회계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에 통신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의 추세가 회계 분리의 복잡성을 높였고, 이는 결국 회계 분리의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SK텔레콤은 2008년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여 SK브로드밴드라는 사명으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KT와 KTF가 합병했고, 2010년에는 LG텔레콤, LG데이콤, LG과워콤이 합병했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가 개별 역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역무별 회계분리의 어려움이 크지 않았으나, 합병후에는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역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회계 분리의 오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2000년대에 들어 회계분리 위반 사례는 <표 3-10>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총 검증대상사업자 수 대비 회계분리 위반사업자의 비율은 2007년, 2008년, 2009년간 모두 100%였다. 이는 모든 검증대상사업자가 회계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본 회계분리 위반 비율은 평균 86%나 된다.

회계분리 위반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모든 검증대상사업자의 회계분리 위반 건수가 84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360건으로 약 4.2배 증가하였다. 이는 검증대상사업자 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자당 회계분리 위반 건수가 평균 7건에서 17.1건으로 약 2.5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과태료 수준은 회계분리 위반 사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총 과태료는 2004년 4,700만 원에서 2009년 8,700만 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개별 사업자가 부담하는 평균 과태료는 2004년 392만 원에서 2009년 414만 원으로 약 1.1배에 증가한 것에 그쳤다. 한 사업자당 회계분리 위반 건수가 4.2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과태료 증가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표 3-10〉 회계분리 위반 및 과태료 통계(2004~2009)

회계연도	'04	'05	'06	'07	'08	'09
검증대상 사업자 수	12	15	21	17	21	21
과태료 부과 사업자 수	8	9	14	17	21	21
회계분리 위반 비율(사업자 수 기준)	67%	60%	67%	100%	100%	100%
회계분리 위반 건수	84	132	274	340	299	360
사업자당 평균 위반 건수	7	8.8	13	20	14.2	17.1
총 과태료(단위: 만 원)	4,700	4,400	6,800	8,100	7,800	8,700
사업자당 평균 과태료(단위: 만 원)	392	293	324	476	371	414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대해 과태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통신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1천 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라는 것이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회계분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0년 영업보고서의 검증 결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혹

은 회계정리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회사의 규모 및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과징금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징 부과 상한액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¹¹⁾

1) 과징금 기준 금액의 산정

과징금 기준 금액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관련 매출액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의 매출액을, 가입자 모집이나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 동안의 가입자 수에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과 가입기간을 모두 곱하여 결정된다. 기준 금액을 산정한 후에는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고 3%까지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3-11>에서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표 3-11>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부과기준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제7호 위반 (제5호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위반 (이용약관 위반 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2~3%	1~2.5%
중대한 위반 행위	1~2%	0.5~1%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1% 이내	0.5% 이내

11)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관련 장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정리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로 과징금 상한선을 두고 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3%, 제5호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2.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을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필수적 가중 여부 판단

기초적인 과징금을 산정한 후에는 필수적 가중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가중하여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표 3-12>와 같이 금지 행위 위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기인 경우에는 필수적 가중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위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표 3-12> 금지행위 위반 기간에 따른 필수적 가중 금액

구분	위반 기간	필수적 가중 금액
단기	2개월 이내	없음
중기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가산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가산
장기	12개월 초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가산

금지 행위 위반 횟수와 관련한 필수적 가중도 있다.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 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추가적 가중·감경 여부의 결정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금지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

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가중·경감할 수 있다. 가중·경감 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조류하지 않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감경 사유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 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경우 등이 있다.

제 4 절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

사후적 회계감독이란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회계규정, 회계기준 및 회계분리지침서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를 감독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불성실한 회계보고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에 불성실에 대한 제재방법을 과태료 부과 제도에서 과징금 징수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적 방법과 병행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성실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1.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장에서 설명한 통신회계의 법적 체계와 사업자가 작성하는 회계분리지침서에 따라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시행령 및 고시들이 모든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유권해석 또는 자문단의 의견이 법체계가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유선, 무선 그리고 기술 환경, 특정 배부기준의 적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검증기관과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업자의 입장에 따라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전기통신회계는 상호접속료 등 각종 대가 산정 및 역무간 내부보조 방지를 위한 별도의 회계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회계규정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실무적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전기통신회계제도를 처음 접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 회계법인 담당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6년 5월 처음으로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해설서를 발간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두 번째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3월 해설서 발간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4G서비스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회계기준뿐만 아니라 회계규정 해설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간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전기통신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를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해설서에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보의 활용,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에 대한 지적 사항의 내용,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의 해설을 포함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설 관련 내용은 각 조항별로 먼저 요지를 설명하고 나오는 용어 중 해설 또는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필요시에는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한 유권해석과 회계자문단의 자문 내용을 해당 조항별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회계교육제도 수립

가. 교육의 필요성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면 다양한 오류 사항이 지적되어 있는데, 지적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사업자의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단순 실수이다. 또한 검증 결과를 놓고 검증을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사업자의 다름에서 회계법인이 회계규정, 회계기준 및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다. 또한 회계검증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담당자도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교육은 필요하며, 교육의 내용은 피교육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보

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 보고서를 검증하게 되는 회계법인 관계자와 방송통신위원회
원회의 검증 담당자, 보고서를 이용하는 담당자별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를 위한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규제정책과 규제회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많지 않다.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첫째, 규제회계정보를 이용한 가격규제, 가격규제가 필요한 규제정책,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제도의 차이점 등을 설명한다. 둘째, 규제회계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전기통신사업규제회계의 개요, 자산과 비용의 분리, 역무별 회계분리, 사업비용, 투자보수 및 총괄원가, 회계분리지침서와 영업보고서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표 3-13> 사업자를 위한 규제회계제도 교육(안)

교육내용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방송 규제회계제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환경 - 정책당국에 의한 가격규제 - 규제정책과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의 차이점 	4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규제회계개요 • 전기통신 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분리절차 및 자산과 비용의 분리 - 역무별 회계분리 - 사업비용, 투자보수 및 총괄원가 - 회계분리지침서와 영업보고서 	8시간

회계분리 사례 혹은 비용, 특히 미래지향적인 원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하여 4시간을 교육시간으로 덧붙일 수 있다.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자세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계분리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교육대상으로 하여 한다.

사업자는 매년 3월 30일 혹은 31일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고, 회계분리지침서 제출 요

구가 있는 경우 혹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6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때문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교육은 4월부터 5월 사이에 실시하면 사업자들이 회계분리지침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가 많을 경우 4월과 5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방송통신회계기준이 입법되면 전기통신회계 교육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 검증 담당자와 회계법인 검증 담당자

검증 업무를 신규로 담당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자는 우선 회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검증 담당자는 사업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회계분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회계검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업자가 3월 30일 까지 영업보고서와 더불어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4월에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검증을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적어도 3월 30일까지 선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검증업무를 조기에 실시하여 규제회계정보가 필요한 규제정책을 보다 빨리 수립할 수 있으며 더불어 검증 담당자인 방통위 담당자와 회계법인 담당자를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내용은 <표 3-14>와 같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의무와 의무 제공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의무와 전기통신설비간의 관계가 중요하며, 여기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가장 중요한 공통자산이 인식이 되며 자산의 의무별 회계분리의 밑그림이 된다. 다음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회계단위가 수행하는 회계처리 및 회계분리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회계분리 방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전에 과정에 대하여 숙지를 하기 위함이다.

사업자의 의무별 회계분리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분리부터 시작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무엇인지, 전기통신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설명되어야 한다. 사업자의 사업환경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규정하지 못하고 사업자에게 일임한 배부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분리방법은 영업수익, 특히 결합판매로 인한 결합상품수익의 회계분리방법, 의무별 영업비용과 영업외손익 회계분리방법, 공통자산에 대한 회계분리 방법에 대한 설명 내지 교육이 있어야 한다.

〈표 3-14〉 검증담당자를 위한 회계분리지침서 교육(안)

교육내용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분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의무 및 사용중인 통신망 - 회계단위별 회계분리 흐름도 	1시간 ~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별 회계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분리 - 영업수익 회계분리(결합상품 포함) - 영업비용 회계분리 - 영업외손익 회계분리 - 자산의 회계분리 	2시간 ~ 3시간

회계법인 검증담당자는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공인된 회계지식이 있지만 규제회계에 대한 회계지식과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사업자와 많은 다툼을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그들에게 회계 검증과 관련된 사항들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재 매년 주요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고 있으며, 검증업무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을 위한 교육은 회계검증을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한 후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표 3-13〉의 사업자를 위한 규제회계제도 교육과 〈표 3-14〉의 회계분리지침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회계분리지침서 교육은 회계법인이 회계검증을 하기로 결정된 사업자의 회계분리 지침서를 교육한다. 이 때 검증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도 함께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라. 일반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방송통신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동 교육과정은 '방통융합 직무역량 향상과정', '법률회계전문과정', '정보화과정', '공직리더양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전문과정으로 통신방송융합회계교육이 3일 21시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3. 질의·회신 절차 확립

가. 필요성

현행 회계규정은 조문식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가 회계처리 및 영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통신회계에서는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가 없기 때문에 회계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비공식적인 질의·회신절차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회계자문단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의견을 질의 당사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회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처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계처리 현안과 현행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식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실무 해석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사업자의 개별적인 회계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정부의 공식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회신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도 회계처리의 질의·회신을 상시적으로 담당할 독립적인 민간기구나 ‘회계자문위원회’ 등의 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질의·회신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신 의견에 공신력을 부여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자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신 의견을 외부 이용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질의 방법

전기통신회계 질의·회신 방법도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질의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민원센터’에 ‘규제회계질의회신 Q&A 게시판’을 개설하여 질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전기통신회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써 질의·회신의 신속성 및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질의·회신의 경우 특별한 절차 및 양식을 갖지 않고, 질의자가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자 성명, 연락처 정도의 항목만을 포함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표 3-15>와 같이 질의양식을 정식으로 갖추어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법이다. 우편, Fax, e-mail 등으로 질의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필수적으로 질의자는 질의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준원 양식과 유사하게 개인인적사항 및 질의내용,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 검토의견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질의양식을 작성하고 난후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신력을 갖는 회신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표 3-15> 방송통신위원회 질의양식(안)

1. 성명,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의 주소, e-mail 주소			
성명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의 주소		우편번호	
e-mail 주소			
2. 질의내용			
3.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			

다. 질의·회신 절차

질의의 회신절차는 질의내용에 따라 [그림 3-7]과 같이 3가지 절차로 나누어서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질의내용이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한 질의인 경우 시장분석팀의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2인의 담당자가 이를 검토하고 시장분석팀장이 회신하도록 한다.

둘째, 질의의 사안이 중대하면 검토한 내용을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질의회신위원회'가 검토하여 이용자보호국장이 회신한다. 회계기준 제14조가 규정한 '회계전문위원회'가 재설치되면 회계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질의회신위원회를 구성한다. 재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규제회계전문가를 연구기관, 학계 및 회계법인에서 선정하여 구성하며, 질의가 접수되면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토서를 작성하여 이용

자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국장이 검토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셋째, 질의회신위원회가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혹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계전문위원회의 전체회의에 혹은 5인으로 구성 가칭 '확대 질의회신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고 결정한다. 과반수 인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검토 후 확정한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그림 3-7] 방송통신위원회 질의회신 절차



라. 회신기간과 질의서 반려

방송통신위원회는 질의서를 접수하게 되면 질의의 적시성 제고를 위하여 익일을 접수일로 하여 근무일수 14일 안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의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질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익일을 접수일로 하고,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자료가 보완된 일을 접수일로 한다.

질의서가 질의양식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의 내용이 질의응답업무의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질의자가 자료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된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질의자의 신원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기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질의는 반려한다. 회계기준의 변경은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4. 회계분리지침서 검토 강화

실제 검증시에 검증기관과 사업자는 회계분리지침서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많다. 이러한 이견은 회계분리지침서가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되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이다. 사업자들은 회계분리지침서대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증기관은 회계분리지침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회계분리지침서를 제대로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반영한다면 이 후 작성되는 영업보고서의 품질은 훨씬 향상될 것이다.

회계분리지침서 검토과정은 검토 뿐만 아니라 지침서를 교육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분리지침서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와 함께 듣고, 사업자, 전문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증담당자가 지침서의 회계분리 방법을 토의하여 가장 적절한 회계분리 방법을 회계분리지침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회계분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회계검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회계분리지침서 검토는 사업자,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이 함께 11월 혹은 12월 2~3일이 걸쳐서 실시한다. 회계분리지침서 검토는 사업자가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한 6월 30일 이후부터 방통위가 회계분리지침서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12월 30일 사이에 실시하면 된다. 연중에 대부분 지난해에 검토한 회계분리지침서로 검증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검증업무가 끝난 후 혹은 끝나가는 시기인 11월과 12월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회계분리지침서 검토는 통신사업자인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U+별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때 지침서 설명은 사업자가 주도로 하며, 사업자, 회계전문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토론하며 적절한 회계분리 절차 및 방법을 찾아 가는 협동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검토내용은 <표 3-16>과 같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의무와 의무 제공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의무와 전기통신설비간의 관계가 중요하며, 여기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가장 중요한 공통자산이 인식이 되며 자산의 의무별 회계분리의 밑그림이 된다. 다음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회계단위가 수행하는 회계처리 및 회계분리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회계분리 방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전에 과정에 대하여 숙지를 하기 위함이다.

사업자의 의무별 회계분리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분리부터 시작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무엇인지, 전기통신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야 한다. 사업자의 사업환경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규정하지 못하고 사업자에게 일임한 배부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분리방법은 영업수익, 특히 결합판매로 인한 결합상품수익의 회계분리방법, 역무별 영업비용과 영업외손익 회계분리방법, 공통자산에 대한 회계분리 방법에 대한 설명 내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표 3-16〉 회계분리지침서 검토(안)

검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분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역무 및 사용 중인 통신망 - 회계단위별 회계분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별 회계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분리 - 영업수익 회계분리(결합상품 포함) - 영업비용 회계분리 - 영업외손익 회계분리 - 자산의 회계분리

제 4 장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제 1 절 방송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운영

1. 회계제도 운영 개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회계제도는 방송사업 회계와 통신사업 회계로 구분된다. 회계제도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도의 수립은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규정과 기준을 제정하고, 필요시 개정하는 것이다. 제도의 운영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보고서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가를 검증하고, 필요시 규제정책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 규정’)'에 의하면 통신사업 회계에서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이 통신정책국의 통신정책과와 이용자보호국의 시장조사과로 나누어져 있다. 통신정책과는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조사과는 ‘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검증’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에 방송사업 회계제도의 수립과 운영업무는 시장조사과가 담당하고 있다. 즉, 시장조사과는 ‘방송사업 회계분리 제도의 수립’와 ‘방송사업자 영업보고서 등 회계검증’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관련 원가의 산정방안은 각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시장조사과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원가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가를 검증한다. 예를 들면 통신정책과는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접속원가의 범위와 접속요율 산정방안 등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제정하지만, 시장조사과는 사업자가 제출한 ‘상호접속 등 협정의 대가 산정의 적정성 조사’ 업무만을 담당한다.

적정성 업무를 위하여 회계전문가를 정책부서 모두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회계전문가를 한 곳에 배치하여 여러 정책부서가 요구하는 적정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회계제도와 달리 시장조사과와 정책담당부서의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호협조할 업무에 대하여 공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2. 회계정보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가. 영업보고서 검증

영업보고서 검증업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회계규정 및 회계기준과 회계기준에 의해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분리지침서에 따라 사업자가 영업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영업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의 원가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역무별로 분리된 원가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통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검증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분석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으로,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시장분석팀은 4월 초순까지 검증업무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4월 중순부터 9월까지의 본격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말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를 검토하고,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월 이내 수정 영업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나. 정책 관련 원가 등의 검증

시장분석팀의 영업보고서 검증 이외 원가검증 업무는 상호접속과 보편적역무 제공과 관련된 원가에 대한 검증이다. 접속원가와 손실보전금 등의 검증은 사업자들이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에 의해 역무별로 분류된 원가에 기초하여 제출한 규제원가정보가 각각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이 규정한 접속원가와 손실보전금 및 분담매출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조사팀은 통신서비스 원가의 주요한 원가인 투자보수 산정에 필요한 투자보수율을 재무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상호접속과 보편적역무 정책이외에도 규제원가정보가 필요한 통신정책은 제3장 제1절

규제제도와 규제회계정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이 있다. 전기통신설비와 가입자선로에 대한 이용대가는 각각의 기준이 규정하는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표준원가계산방식은 현재의 통신망을 기초로 하지 않고 이상적인 통신망을 재설계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설비제공 및 공동활용과 관련한 원가 분석 업무는 정기적인 업무는 아니며, 사업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검증절차는 거의 없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속료 산정의 기초 자료인 접속 통화량 검증 업무는 외부의 독립된 검증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화량을 정확하게 집계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망내통화량과 망외통화량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마다 음성통화의 호유형별 통화량과 설비별 통화량을 예측한다.

3. 시장분석보고서

시장분석팀은 통신사업자 성과 파악을 통한 시장 분석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및 경영 현황, 재무구조 등에 대한 통계 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통신사가 분기별 IR 보고서를 발간하면 시장분석팀은 이를 분석하여 각 사업자별 분기별 보고서와 통신시장 전체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한다. 1년 치 IR 보고서 분석이 모두 끝나면 전체 통신시장 현황을 분석할 목적으로 연간 통신시장현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편, 방송·통신 시장 전체의 동향을 분석하고 상시적인 정책 현안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방송통신 시장분석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업무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들의 재산 상황 공표 및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업무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장분석팀은 매년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과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재산상황 공표집은 각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재산상황에 기초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모아 놓은 것이다. 재

산상항 공표집 작성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다. 2010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항 공표집은 전체 394개 방송사업자 중 재산상항 자료를 제출한 361개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보고서는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항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사업자 전체 및 방송사업 매체별 재무현황·손익현황·주요재무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4. 회계제도 수립과 운영의 일원화

‘회계제도 운영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사업 회계제도에서는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과에서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통신사업 회계제도에서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이 통신정책과와 시장분석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회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일원화 하여야 한다.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은 통신정책 수립과 운영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원가를 역무별로 배부하는 회계작업이기 때문에 회계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일원화하여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부서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 회계업무 담당 기관

회계업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통신회계제도 수립		통신정책국									
영업보고서 검증		이용자보호국 주관, 전문기관(회계법인)에 위탁									
접속 원가	Top-down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용역연구원				
	Bottom-up	전자통신연구원									
접속 통화량 검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비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		※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정기적이지 않음)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용역연구원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정기적이지 않음)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산출하는 회계제도는

〈표 4-1〉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회계법인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다. 영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접속원가와 손실보전금에 대한 검증은 용역을 받은 회계법인에 의하여 검증이 된다. 접속요율 산정에 필요한 검증통화량 및 예측통화량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회계적 접속요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관 하에 회계법인에 의하여 검증된 접속원가와 정보통신연구원에 의하여 검증된 통화량에 의하여 산정되고, 공학적 접속요율은 정보통신연구원이 예측한 통화량에 기반하여 전자통신연구원에 의하여 산정된다. KT가 제출한 보편적역무손실금은 시장분석팀이 검증한다. ‘설비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과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은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맡기되 대가산정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규제정책 운영에 필요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정보 검증 업무를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 위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검증대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검증을 담당할 회계법인도 선정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선정시에는 회계법인과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회계감사 회계법인은 제외되고 있으며, 매년 동일한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것도 피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이 선정된 혹은 연속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회계법인은 검증을 위한 사전 지식습득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검증에 참여하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규정, 회계기준, 정책에 필요한 대가 산정방안 등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검증작업의 통일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증을 담당할 회계법인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회계검증 업무를 내재화하여 회계제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정책과 관련하여 원가산정을 위탁한 원가는 ‘공학적 접속요율’, ‘접속통화량 검증’, ‘설비제공대가’ 및 ‘공동활용 대가’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력구성과 정부조직의 비 탄력성으로 상기의 업무가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통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업무는 내용적으로 상호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여 수행하면 중복된 업무를 상당 부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방송사업에 대한 회계제도와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회계정보 수립 및 운영을 전담할 인원의 확충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회계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관의 설립을 통해 회계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2010년 국가회계를 보조하는 기구로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설립되었듯이 방송통신회계에서도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혼재되어 수행 중인 회계검증 기능과 시장 분석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관인 (가칭)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 2 절 국가회계기준센터

1. 설립배경

1990년대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국가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990년대 이전의 정부회계는 주로 현금회계 및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금주의 및 단식부기 회계제도 하에서는 실제로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경우에만 회계처리를 하고,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키지 않고 결과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성과파악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등 총 15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재정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특히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IMF가 현금주의로 작성된 국가 통합재정수지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회계기준 시안이 2000년 2월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2004년에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하여 2005년에는 12개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험 운용하였다. 2006년 8월부터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전 부처로 확대 운용하였고, 이후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도입을 위한 근거법으로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을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가회계법은 국가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및 회계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회계법 제8조는 국가회계제도의 운영,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회계제도의 연계 등과 관

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설립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0년 3월 26일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1)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을 정비하고, 2) 국가회계 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3)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회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회계에 대한 실무해석·질의회신 검토 등 국가회계에 관한 체계적 조사·연구 등을 민간전문기관에 국가회계에 대한 「국가회계기준센터」(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enter)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¹²⁾ 2010년 5월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운영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였고, 2010년 7월 26일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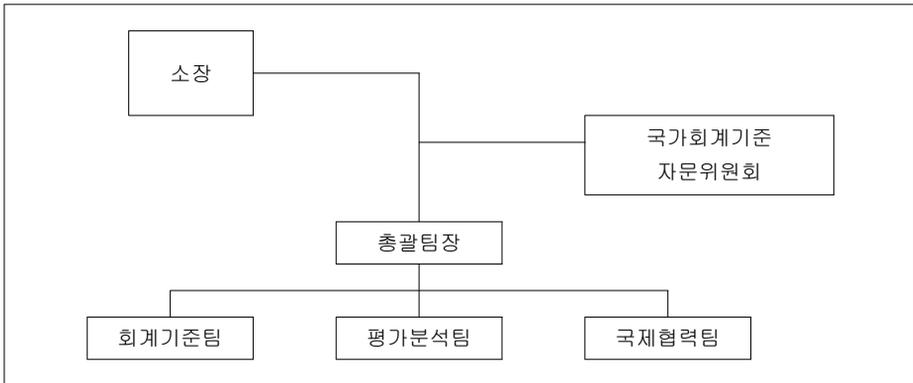
2. 조직 구성 및 예산

가. 조직 구성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운영 되고 있다. 2010년 12월 말 현재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1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관련 업무 경력은 적게는 1년, 많게는 9년 정도이다. 국가회계기준센터 조직은 소장 1명, 총괄팀장 1명, 국가회계기준팀장 그리고 회계기준팀, 평가분석팀, 국제협력팀의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조직도는 [그림 4-1]과 같다.

12) 국가회계법 제11조 4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4-1] 국가회계기준센터 조직도



자료: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

소장은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총괄팀장은 세 개의 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세 개의 팀은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① 회계기준팀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 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등에 대한 실무해석·질의회신 검토, 국가자산·부채 회계처리방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평가분석팀은 국가 재정정보 검증체계 구축 및 관리, 국가회계관련 통계 분석, 재정 분석기법 개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③ 국제협력팀은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IPSAS 등) 동향분석, 국가회계실무교육 지원 및 발생주의 국가회계 홍보 등의 업무를 통해 국내의 회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예산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국고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4월 23일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 금액은 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2010년 5월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가회계기준센터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후 실제로 할당된 예산은 10억 7천만 원이었다. 이 예산은 약 70%의 인건비와 21%의 사업비, 9%의 사업비 및 시설비로 구성되었다. 예산의 구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인건비 다음으로 사무용 장비 및 사무실 임차료가 포함된 사업비 비중이 높다.

〈표 4-2〉 2010년 예산 사용 내역

(단위: 원)

	예산	비중	사용액	비중	불용액	비중
인건비	680,000,000	69.9%	431,711,362	61.0%	248,288,638	93.7%
사업비	70,200,000	7.2%	62,976,235	8.9%	7,223,765	2.7%
운영비	204,190,000	21.0%	193,015,072	27.3%	11,174,928	4.2%
시설비	19,000,000	2.0%	20,584,670	2.9%	-1,584,670	-0.6%
소계	973,390,000	100.0%	708,287,339	100.0%	265,102,661	100.0%
부가가치세	97,339,000		70,828,734		26,510,266	
총합계	1,070,729,000		779,116,073		291,612,927	

자료: 국가회계기준센터 2010년 운영결과보고서

계약체결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인건비 4억 3,171만원(61.0%), 사업비 6,298만원(8.9%), 센터운영비 1억 9,302만원(27.3%), 시설비 2,058만원(2.9%)이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총 7억 8천만 원(부가세 후)으로 최초에 할당된 예산인 10억 7천만 원보다 약 2억 9천만 원이 적은 수준이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인건비 항목에서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절약을 했기 때문이다. 2010년 예산 및 실제 사용 내역은 〈표 4-2〉와 같다.

3. 역할

국가회계기준센터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에는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업무로 14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기본적인 업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발생주의 국가회계관련 전문적인 연구·조사 및 유권해석, 회계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회계관련 전문적인 연구·조사 및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1항부터 11항에 제시되어 있으며, 회계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12항과 13항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기준회계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3〉 국가회계기준센터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업무)

-
1.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방안 검토
 2.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검토
 3. 국가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검토
 4.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개별 관련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검토
 5. 사업(프로그램)별 원가정보 분석 및 성과평가 환류방안 검토
 6.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의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검토
 7. 각 중앙관서 및 소관 회계·기금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8.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및 관리
 9. 국가회계관련 통계 분석 및 검토
 10.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11. 외국(미국, 영국 등)의 회계제도 동향 분석 및 연구
 12.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강의지원 등 국가회계 실무교육 지원 등
 13.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1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

1)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1항에 의하여 회계처리지침의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시행중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회계처리방안 지침을 마련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생소해 하는 부분을 돕기 위하여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해설서, 재정운영표 해설서 등도 작성한다. 국가회계기준센터가 2010년에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에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처리지침(안) 마련,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방안 마련,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제정방안 마련, 국고금 회계처리 지침 개정(안) 마련 등이 있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2항에 의하여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검토 역할도 수행한다. 이용자가 국가회계기준센터에 질의를 하는 경우 위탁사무처리지침 제17조에 의거하여 단순 안내사항은 정해진 기일 내에 센

터가 답변한다. 만약 질의회신이 추가적인 기준 역할을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동 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회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신이 완료된 질의사항은 한국은행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총 16건이 있다.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는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사회기반시설을 계상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실사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또한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시행이 유예된 각종 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준칙 및 처리지침을 정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3항)

2) 발생주의·복식주의 회계제도 활용방안 마련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다.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10항은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다양한 계량적 수치를 바탕으로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건전성지표, 원가분석지표를 공시한다.¹³⁾ 재정상태표를 이용해서는 유동비율, 순자산비율, 부채비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재정운영표를 이용해서는 공무원인건비비율, 관리운영비비율, 예산집행액 대비 원가비율, 순자산 대비 원가비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생주의·복식주의 회계제도의 또 다른 활용방안으로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5항에 언급된 사업(프로그램)별 원가정보 분석 및 성과평가 환류방안을 들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원가정보를 성과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별로 총원가를 집계한 후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고 간접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배부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역할도 한다.

3)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회회계결산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검증체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위탁사무

13) 재무정보의 공시는 e-나라지표,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다.

처리지침 제4조 4항, 7항, 8항). 구체적으로 2009년 재정상태표의 변동내역과 결산보고서 분석을 통해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결산담당자가 국회회계결산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금회계, 기업특별회계, 중앙관서 결산검토,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에 이르는 국회회계결산 전 과정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국가 재무제표가 처음부터 신뢰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일차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4) 국내의 환경변화 대응 방안 마련

현재 우리나라 정부 회계기준이 발생주의·복식주의 기준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회계기준센터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먼저 도입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을 다른 국회회계제도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한다(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6항).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의 차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국회회계를 어떻게 통합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국내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회회계기준센터는 미국과 영국 등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한 주요선진국의 회계제도의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회계기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및 국외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11항).

5) 발생주의 국회회계 교육 및 홍보

마지막으로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12항, 13항에 의거하여 국회회계기준센터는 발생주의 국회회계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회계가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결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실무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회계제도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국회회계기준, 회계처리지침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적인 교육까지 함께 수행함으로써 국회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전문가·언론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국회회계제도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회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회계제도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제 3 절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 설립 방안

1. 수행 업무

최근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고, 이용자 보호환경과 공정 경쟁 등 각종 규제 이슈들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칭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조직 혹은 기관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은 커져 가고 있다.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가 맡을 업무는 광의의 회계제도 운영이다. 광의의 회계제도 운영은 협의의 회계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포함한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의 수집, 검증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는 방송통신 규제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업무수행 행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표 4-4>와 같이 통합화와 일원화를 통하여 센터가 자체적으로 방송통신규제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4>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의 업무

구 분	업 무		
	회계제도 수립 및 검증	정책 원가 산정 및 검증	시장 및 원가 분석
단기	- 사전적 회계감독 - 사후적 회계감독	- 접속원가 검증 및 산정 - 보편손실보전금 검증	- 각종 원가 산정 및 검증 - 시장 분석
중기	- 영업보고서 자체 검증 - 회계제도 수립	- 접속원가 및 손실 보전금 검증 및 산정 자체 수행 - 접속통화량 검증 - 공학적 통신원가 산정	- 회계 자료의 통계분석 및 검토
장기	- 회계제도 관련 연구	- 정책원가 자체 산정 및 검증	-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기타	- 전기통신회계에 관한 업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기타 사항		

가. 현행 업무 이관

업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시장분석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방송통신회계 관련 업무를 센터로 이관한다. 구체적으로 사후적 회계감독 기능과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 업무, 접속원가 및 보편손실보전금 산정·검증 업무, 방송통신시장 분석 업무이다.

1) 회계감독 기능

사후적 회계감독은 영업보고서 검증과 과징금 부과 업무이다. 센터 설립 초기에는 방송통신회계제도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인력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당분간은 현행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업무수행행태를 유지한다.

또한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을 확대 수행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분리지침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이해 관계자들 간의 다툼을 극소화하고, 사업자들의 일관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해설서를 발간한다. 또한 회계제도 운영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의와 회신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기업 회계 담당자 및 회계검증 인력을 대상으로 워크숍,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2) 정책원가 검증 및 산정업무

사업자들이 상호접속기준에 의해 산정한 접속원가와 KT가 산정한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검증도 영업보고서 검증과 동일하게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면서 검증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회계학적 접속원가, 투자보수율 및 손실금을 센터가 직접 산정한다.

3) 시장분석업무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수행되고 있는 재무회계정보에 기초한 방송·통신 시장 분석보고서는 전문적인 회계지식 없이도 작성할 수 있다. 때문에 시장분석 업무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와 경영분석, 통신사업을 위한 분기별 통신시장 영업실적과 연도별 통신시장 현황분석을 센터가 직접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이외의 정책부서에서 위탁하는 정책 수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원가도 검증하고 산정한다.

나. 업무의 통합화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가 통신회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회계제도 업무를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한다.

1) 회계제도 수립과 운영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회계감독 기능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현재 회계법인에 위탁되고 있는 영업보고서 검증 업무를 센터가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검증 업무의 직접 수행은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검증 업무 경험의 축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와의 다툼을 극소화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 지식과 검증 결과를 회계제도수립에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회계제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통신사업회계제도의 제정과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영업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업무 외에도 방송사업 회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회계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검증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2) 정책원가 검증 및 산정업무

회계 전문 인력이 확보되면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접속원가와 보편적역무 손실금 검증 업무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회계적 접속원가와 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또한 접속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통합화하여 접속요율 산정과 관련된 '통화량 검증과 예측' 업무, '공학적 접속원가 산정' 업무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수행한다.

3) 회계 자료의 통계 분석 및 검토

업무의 통합화로 방송통신사업과 관련된 영업·통계·회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한다. 이는 정책담당자들이 보다 손쉽게 정보를 분류·재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운영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의 재무회계 정보와 규제회계정보를 축적하고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업무의 일원화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는 장기적으로 방송통신회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방송통신회계의 결과물인 영업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내외 통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방송통신회계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각 통신사업자의 회계처리담당자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현행 회계제도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원가 산정 및 검증

공학적 접속원가 산정으로 확보된 공학적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설비제공대가 및 공동활용 등과 관련한 원가산정업무를 직접 담당한다. 이외의 다른 정책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원가 검증 및 산정 업무를 수행한다. 상기 업무는 통신망에 대한 전문 지식과 영업보고서의 규제회계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규제정책 원가의 검증 및 산정과 함께 일원화한다.

3)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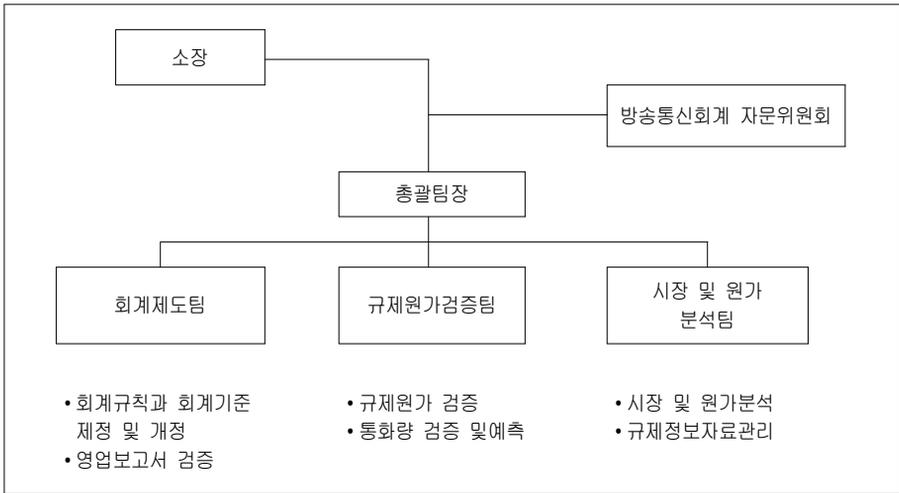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는 회계정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정보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통신 규제정보센터에서 축적한 영업보고서와 같은 자료는 일반적인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고급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조직 구성 및 예산

가. 조직 구성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의 조직 구성은 [그림 4-2]과 같이 센터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책임질 소장 1명, 각 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팀장 1명,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 회계제도팀, 규제원가검증팀, 시장 및 원가 분석팀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 팀은 10명 내외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송통신규제정보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센터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인 통신회계기준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 조직도(안)



① 회계제도팀의 주요 업무는 통신사업자, IPTV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과 관련된 업무이다. 각 사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의 검증, 회계분리처리지침서의 검토, 실무해석서 발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회계 검증 업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회계제도의 제정 및 개정 방안 제시,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업무 등도 맡을 수 있다.

② 규제원가검증팀은 규제정책과 관련된 접속원가와 보편적 역무 손실금 등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접속원가검증은 2년마다, 보편손실금 검증은 1년마다 수행한다. 또한 접속요율산정을 위한 통화량 검증, 집계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매년 담당하며, 투자보수율 산정도 매년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공지한다.

③ 시장·원가 분석팀은 사업자들이 제출하고 회계기준 검증팀이 검증한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각종 원가 산정작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 접속과 보편 업무이외의 다른 규제정책과 관련된 원가분석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공학적 원가산정업무를 담당하여 각종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통신시장 전체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 현안 이슈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회계자료의 통계적 관리를 담당한다.

- ④ 방송·통신회계는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방송·통신 회계와 관련된 유권해석, 질의회신을 담당할 상시적인 기관을 필요로 한다. 방송통신회계 자문위원회는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및 사업자가 질의한 경우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회신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나. 예산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연합회와 같은 외부 기관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예산은 전액 기획재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통신규제정책 수립을 보조한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 운영 자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정부의 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성격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의 예산이 정부일반회계에서 충당된다면 어느 정도 센터 예산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의 예산이 정부특별회계에서 충당된다면 매년 예산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통신회계 및 규제회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연합회 혹은 기타 기관이 예산을 부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1년 3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되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사례에서처럼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에 필요한 초기 예산은 1년에 약 1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센터가 자리를 잡으면 년간 5~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선 초기에 필요한 인원이 12명인 경우,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약 5억~6억 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센터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예산과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한다고 볼 때 3억~4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조직의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이다.

3. 운영주체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설립하려면 설립 운영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할 것인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 직접운영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면, 현재 시장조사과 내에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보고서 검증 등의 업무를 위해 개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와 비슷한 형태일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면 정보 활용의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직접 운영을 한다면, 조직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면,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에서 일할 인력을 용역계약 등의 형태로 직접 채용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용역계약을 통해 인력을 운영하는 형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나. 독립적 운영

두 번째 방법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가 더 적합할 것이다.

센터가 통신회계 혹은 회계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독립적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회계기준센터도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라는 독립적인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근무

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회계센터라는 독립적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공인회계사회 소속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회계학 분야에서 쌓아왔던 전문적인 지식들을 국가회계기준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도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센터를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방송통신규제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규제와 관련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단점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단기적 관점에서 센터를 설립하고 초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5장 결 론

사업자로부터의 이용자보호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강화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회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시장분석기능 강화와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방송통신 규제정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은 재무회계정보 뿐만 아니라 규제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 강화를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재무회계정보를 단순 정리한 시장분석보고서를 내부 직원에게 제공한다.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시장분석은 재무회계정보보다는 규제회계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규제회계제도하에서 필요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보고하게 함으로 보다 규제환경에 적합한 규제정보를 가질 수 있다.

방송통신시장분석에 필요한 시장정보가 서비스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분석팀은 외부에 공표된 재무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규제환경에 적합한 규제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규제정보 수집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하며, 규제정책과 이용자보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규제정보가 무엇인가를 정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하여야 하며, 또한 수집된 규제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연구기관을 비롯한 타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회계감독 기능 강화 방안은 규제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 강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유용한 정보를 적정하게 생성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생성되는 재무회계정보와는 달리 규제회계정보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장한다.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 책임을 묻는 제재제도가 최근 과태료부과제도에서 과징금부과제도로 전환되었다. 과징금제도로의 전환은 영업보고서 검증업무와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검증결과 지적되는 오류 사항들의 대부분은 회계규정, 회계기준,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면 많은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강화 방안의 출발점은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사용자 위주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작성하여 재출간하여 영업보고서 작성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영업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신사업의 규제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규제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 검증담당자, 통신위원회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맡은 업무에 따라 실시한다. 회계절차에 대한 의문점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필요하다. 사실확인이 필요없는 단순질의는 온라인을 이용한 회신절차를 마련하고, 사실확인 필요한 질의는 서면질의하게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밝아 공식적인 회신을 하게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검토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검증작업 과정에서 지침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 검증담당자인 담당공무원과 회계법인의 검증담당자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계지침서 검토는 사업자,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이 함께 사업자가 영업보고서 작성 이전인 11월 혹은 12월 2-3일간 걸쳐 실시한다. 사업자가 지침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참가하여 함께 토론하며 사업자에 맞는 적절한 회계분리 절차 및 방법을 찾아가는 협동 검토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자로부터의 이용자보호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계제도 운영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분석기능과 회계제도기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참조로 하여 가칭 방송통신규제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회계제도를 협의의 회계제도와 광의의 회계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회계제도는 회계규정과 회계기준 수립과 운영은 방송사업 회계제도와 동일하게 시장분석팀이 담당하여야 한다. 광의의 회계제도는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회계법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협의의 회계제도와 광의의 회계제도에서 규제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산출한다. 광의의 회계제도에서 산출하는 회계정보의 대부분은 협의의 제도에서 산출하는 원가정보를 재분류하고

재배분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여 중복된 업무를 상당 부문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분석기능과 회계제도기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가칭 방송통신규제정보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센터의 업무는 시장조사팀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업무의 통합화 및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통신회계자료의 일부 검증 업무 및 원가분석 업무를, 중기적으로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통화량 검증, 접속료 산정,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등의 업무를,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송통신회계제도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 수행, 외국 전기통신 회계제도 분석 및 규제회계제도에 대한 교육 관련 업무까지 포괄해야 한다.

센터의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회계제도팀, 규제원가검증팀, 원가시장분석팀으로 구성하여 회계제도팀은 협의의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접속검증팀은 규제정책과 관련된 원가정보 검증 및 생산, 원가시장분석팀은 방송통신시장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센터의 예산은 운영주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부조직에 속한다면 정부예산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혹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면 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 가장 최선의 운영주체는 정부조직혹은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 현재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센터로 설립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참 고 문 헌

국가회계기준센터 2010년 운영결과보고서.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

김영덕(2011), 『IFRS 중급회계 상·하』, 다임.

방송통신위원회(2006),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해설서』.

_____ (2008),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해설서』.

_____ (2010. 10),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현황』.

_____ (2011), 『2010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 『2010년도 통신시장 현황분석』.

_____, 『2011년도 1분기 KT 영업실적』.

_____, 『2011년도 1분기 LGU+ 영업실적』.

_____, 『2011년도 1분기 SK브로드밴드 영업실적』.

_____, 『2011년도 1분기 SK텔레콤 영업실적』.

_____, 『2011년도 1분기 통신시장 영업실적』.

_____, 『통신시장 분석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1.7), 『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변정욱·정 훈·오기석(2010), 『방송회계제도 도입 및 통신회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 법영사.

최아름(2011. 9. 16), “전기통신회계 환경변화와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 《방송통신정책》, 제 516호.

최창규·김현식·김용남(2011), 『IFRS 회계원리』, 웅진패스원.

함창용 외(2008), 『역무통합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 회계제도 개선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함창용·정훈(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규제회계제도 개선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SK텔레콤, KT, LGU+ 2011년 1분기 실적발표(IR).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
방송통신위원회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홈페이지(fias.kcc.go.kr).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별첨 1〉

재무비율지수

시장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재무제표분석(financial statement analysis)을 수행한다. 재무제표분석은 일반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무제표분석을 통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게 된다. 비교재무제표를 이용한 추세분석,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항목별 구성비를 산정하는 백분비재무제표 등 단순한 분석부터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등 각종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주된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재무비율은 재무제표의 구성항목들간의 관련성을 상호비율을 통해 분석하는 기법으로 수익성비율, 유동성비율, 안정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 주당순이익 및 배당과 관련된 비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수익성 비율

수익성비율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비율로, 시장현황 및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총자본순이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은 사업자가 조달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얻었는가를 나타내며 당기순이익을 평균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text{총자본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평균총자본}} = \frac{\text{당기순이익}}{(\text{기초총자본} + \text{기말총자본})/2}$$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으며, 당기순이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text{자기자본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평균자기자본}} = \frac{\text{당기순이익}}{(\text{기초자기자본} + \text{기말자기자본})/2}$$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로부터 얼마의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또한 당기순이익 대신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적용하기도 하며 이를 매출총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이라 한다.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ext{매출총이익률} = \frac{\text{매출총이익}}{\text{매출액}}$$

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는 세부서비스별로 회계분리가 수행되면서 통신회계에 의한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로 당기순이익보다는 서비스별 영업이익률 분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분석팀의 영업실적 보고서는 이익률 개념보다는 사업부문별 영업수익의 추세분석인 성장성 비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방송사업자 경영분석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비율인 수익성 지표로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인건비대매출액, 금융비용대매출액,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사업자 구분별로 경영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방송업과 비교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 및 전기통신업과의 산업별 비교와 최근 3개연도의 연도별 추세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표 1〉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익성 지표

지표	2008	2009	2010	방송업	전체산업	전기통신업
총자산순이익률	(1.22%)	3.55%	3.73%	4.51%	4.94%	5.51%
매출액영업이익률	(4.01%)	0.10%	2.03%	9.03%	5.88%	9.48%
매출액순이익률	(1.77%)	5.35%	5.29%	7.24%	4.50%	6.85%
자기자본순이익률	(1.54%)	4.44%	4.64%	7.10%	10.81%	11.29%
인건비대매출액	25.90%	26.11%	26.18%	17.31%	10.26%	8.08%
금융비용대매출액	0.34%	0.35%	0.21%	2.27%	1.51%	2.32%
이자보상비율	(1164.90%)	28.48%	953.02%	397.17%	390.03%	408.51%

자료: 2010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63p

2. 유동성비율

유동성비율은 기업의 단기부채에 대한 변제능력을 평가하는 비율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있다. 재고자산 및 선급비용 등은 유동 자산에 속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어려우므로 당좌비율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유동자산 외에도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한 항목을 말하며 이를 유동부채로 나누어 비율을 산출한다.

3. 안정성비율

안정성비율은 기업의 장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라고 한다. 즉 장기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원만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하여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자기자본에 비하여 부채가 크다는 것으로 이는 채권자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미하며 채권자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가장 유용하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전세전당기순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이자비용을 몇 회나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이자전세전당기순이익}}{\text{이자비용}}$$

고정장기적합율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어느 정도의 비유동자금이 사용되었는지를 나

타내는 비율로, 비유동자산을 비유동부채와 자기자본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text{고정장기적합율} = \frac{\text{비유동자산}}{\text{자기자본} + \text{비유동부채}} = \frac{\text{자산총계} - \text{유동자산}}{\text{자본과부채총계} - \text{유동부채}}$$

방송사업자 경영분석은 단기채무 지불능력인 유동성과 경기대응능력인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안정성 지표로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비율, 비유동비율, 비유동장기적합률, 차입금의존도, 차입금대매출액의 재무구조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표 2〉 지상파방송사업자 안정성 지표

지표	2008	2009	2010	방송업	전체산업	전기통신업
부채비율	25.95%	24.83%	24.12%	54.67%	114.83%	100.74%
유동비율	297.60%	355.99%	347.03%	182.99%	125.93%	101.49%
당좌비율	291.90%	351.54%	343.78%	179.59%	98.35%	95.26%
자기자본비율	79.40%	80.11%	80.57%	64.65%	46.55%	49.82%
비유동비율	83.99%	79.30%	79.74%	101.26%	121.54%	144.19%
비유동장기적합률	75.09%	70.78%	71.63%	80.69%	86.35%	99.43%
차입금의존도	3.88%	3.43%	3.28%	21.67%	28.21%	28.66%
차입금대매출액	4.96%	5.50%	4.75%	35.51%	26.86%	35.62%

자료: 2010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64p

4. 활동성비율

활동성비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회전율(turnover ratio)로 표현한다. 총자산회전율은 자산 한 단위가 실현시킨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로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다.

$$\text{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평균총자산}} = \frac{\text{매출액}}{(\text{기초총자산} + \text{기말총자산}) / 2}$$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매출채권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나타낸다. 회전수가 높을수록 자산을 효율적

으로 운용했다는 의미이거나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했다는 의미이다.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average collection period)은 재고자산이 판매된 날로부터 판매대금이 회수되는 평균기간을 의미하며, 365일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text{매출채권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평균매출채권}} = \frac{\text{매출액}}{(\text{기초매출채권} + \text{기말매출채권})/2}$$

$$\text{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 = \frac{365\text{일}}{\text{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재무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재고자산회전율이 10회라는 것은 당기에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거래를 10번 반복했음을 의미하며, 재고자산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입과 매출활동을 활발히 수행했다는 의미이다. 실무에서는 매출원가 대신 매출액을 사용하기도 한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재무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text{재고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원가}}{\text{평균재고자산}} = \frac{\text{매출원가}}{(\text{기초재고자산} + \text{기말재고자산})/2}$$

$$\text{재고자산평균회전기간} = \frac{365\text{일}}{\text{재고자산회전율}}$$

방송사업자 경영분석은 기업이 수익획득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표시하는 활동성 지표로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지상파방송사업자 활동성 지표

지표	2008	2009	2010	방송업	전체산업	전기통신업
총자본회전율	0.69회	0.66회	0.71회	0.62회	1.10회	0.81회
매출채권회전율	5.48회	5.46회	5.64회	5.98회	6.83회	6.37회
유형자산회전율	1.63회	1.56회	1.70회	1.94회	3.17회	1.74회
매입채무회전율	40.02회	45.56회	40.87회	25.70회	11.27회	22.07회

자료: 2010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65p

5. 성장성비율

성장성비율은 매출액 또는 총자산등이 전기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비율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IR분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등이 성장성비율에 해당한다. 매출액증가율은 전기매출액 대비 매출액증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총자산증가율은 전기총자산 대비 총자산증가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text{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text{전기매출액}}$$

$$\text{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총자산} - \text{전기총자산}}{\text{전기총자산}}$$

방송사업자 경영분석은 성장성지표로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지상파방송사업자 성장성 지표

지표	2008	2009	2010	방송업	전체산업	전기통신업
총자산증가율	(7.77%)	5.74%	5.08%	4.20%	9.58%	0.18%
유형자산증가율	(3.32%)	1.65%	4.61%	8.70%	8.12%	(1.45%)
자기자본증가율	(7.43%)	6.69%	5.68%	8.11%	13.87%	4.31%
매출액증가율	(2.10%)	(4.95%)	12.12%	11.05%	14.50%	2.66%

자료: 2010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62p

6. 기타비율

주당순이익 및 배당과 관련된 비율로는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장부금액비율(PBR, price book value ratio), 배당성향(payout ratio) 등이 있다. 주가수익비율은 주당주식가격을 주당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주당순이익은 기업에서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후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연평균한 주식수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주가수익비율은 보통주 주당순이익에 대한 주당주가의 비율로, 주당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는 자산가격결정이론에 근거한 비율로 주식의 액면금액 및 유통

주식수와 관계없이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발생주의의 주당순이익 대신에 주당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분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text{주가수익비율} = \frac{\text{주당공정가치}}{\text{주당순이익}} \text{ 또는 } \frac{\text{주당공정가치}}{\text{주당영업활동흐름}}$$

주당장부금액비율은 주당순이익을 주당순자산장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미래이익에 대한 전망이 좋을수록 이 비율이 증가하곤 한다.

$$\text{주가장부금액비율} = \frac{\text{주당공정가치}}{\text{주당순자산장부금액}}$$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총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당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거나 주당배당액을 주당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으면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배당성향이 높으면 미래에도 이 정도의 배당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은 사내에 유보되는 잉여금이 적다는 의미이므로 미래에는 주가가 하락하던지 투자 이익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text{배당성향} = \frac{\text{배당총액}}{\text{당기순이익}} = \frac{\text{주당배당액}}{\text{주당순이익}}$$

7. 재무비율분석의 한계

재무비율분석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정보는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하는 수많은 정보 중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재무비율분석이 해당 기업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관에 의하여 다양한 사업부문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 재무제표 자료의 평균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사업자들간 비교에 있어 각 사업자들의 회계처리방법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비교, 분석결과는 반드시 옳은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보고 시점의 저장(stock)과 유량(flow)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미래를 예측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별첨 2〉

통신산업의 규제재무제표 검증 절차 및 기관

구분	검증절차	검증기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외부회계법인
호주 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C는 사업자가 제출한 규제재무제표가 RAF(Regulatory Accounting Framework) 및 RKR(Record Keeping Rules)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의무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매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1) A reporting carrier or carriage service provider must engage, at its own cost, an external auditor to audit the compliance of the reporting carrier or carriage service provider with these Rules.)
영국 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com은 사업자의 원가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을 갖춘 외부감사인 ((b)to have the use of those systems audited annually by a qualified auditor; and.)
일본 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총무대신에게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 제출 시 다음의 양식이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회계감사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지정한 회계감사인

14) ACCC,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egulatory Accounting Framework, 2003

15) The Communications Act 2003, Section91(6)(b)

16)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칙(총무성령 제42호, 2011.4.27 최종개정), 부칙

구분	검증절차	검증기관
미국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Cost Allocation Manual)을 제출하는 각 사업자가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2년 마다 입증조사(attest engagement)를 받거나, - 2년 마다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외부검증(financial audit)을 받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지정한 독립된 감사인 ((a) Each carrier required to file a cost allocation manual shall elect to either have an attest engagement performed by an independent auditor every two years, covering the prior two year period, or have a financial audit performed by an independent auditor every two years, covering the prior two year period. In either case, the initial engagement shall be performed in the calendar year after the carrier is first required to file a cost allocation manual.)

17) 47 C.F.R. § 64.904(Independent audits)

〈별첨 3〉

유럽의 통신산업 규제재무제표 검증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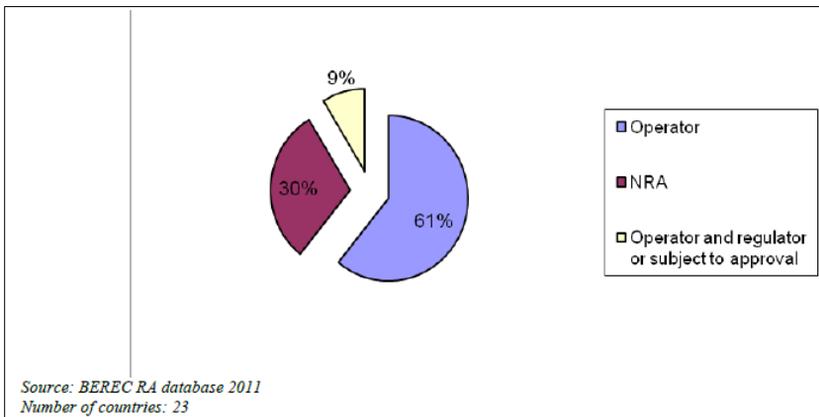
1. 근거

- article 13 of Directive 2002/19/EC
- 국가 규제기관이 가격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가회계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면, 원가회계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감사는 자격있는 직원이 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다른 자격있는 기관에서 하게 할 수 있음

2. 감사 연도

- EU 회원국의 59%가 마지막 감사를 2009년에 시행, 8%는 2010년에 시행

[그림 1] 마지막 감사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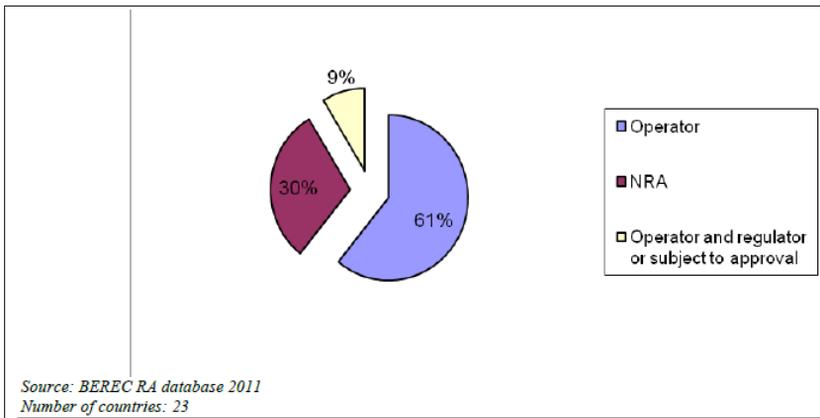


자료: BEREC Report Regulatory Accounting in Practice 2011(2011.10)

3. 감사인의 지정

- 일부 국가는 감사인으로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지정, 17%의 국가 규제기관은 자체적으로 수행
- 61%는 사업자가 감사인을 지정, 30%는 규제기관이 감사인을 지정, 9%는 규제기관이 승인을 하거나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공동으로 지정

[그림 2] 감사인의 선택



자료: BEREC Report Regulatory Accounting in Practice 2011(2011.10)

4. 자료에 대한 접근

- 규제기관의 38%는 사업자가 사용중인 원가회계시스템에 접근권 있음. 62%는 접근권이 없으나, 질문권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접근할 수 있음

5. 오스트리아

- RTR(오스트리아 규제기관)은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규제회계 재무제표 보고 의무 없음
- 과거 TD(Top-Down) 모형 사용시에는 Telecom Austria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1~2명의 RTR직원이 전담
- 소매요금에 대해 가격상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원가정보의 중요도가 덜함. 접속료는

BU(Bottom-up)모형 사용하므로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덜함

6. 영국

- BT만 규제회계 재무제표 제출
- BT가 지정한 외부회계법인이 감사 후 의견 표명
- Ofcom이 직접 감사를 하지는 않지만 필요시에는 BT의 총계정원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음
- Ofcom이 직접 규제회계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 자체가 매우 큰 업무이고 필요시에는 Ofcom이 직접 조사할 수 있기 때문

〈별첨 4〉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 1,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통신경쟁정책과), 02-750-253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0. 1>

제3조(전기통신사업 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 회계는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기통신사업 회계의 원칙)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2.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영업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

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대차대조표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제2호 외의 것
2.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 가.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 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유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설비: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

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6. 전원설비: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2. 건물: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 설비 등

3. 구축물: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경도·굴뚝·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 설비 또는 공작물 등

4. 선박: 선박 및 그 밖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 등

6. 그 밖의 일반지원자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제 3 장 손익계산서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의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①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외비용 등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 의무 손실보전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제 4 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

- 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4.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영업수익·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둘 이상의 사업구역에서 단일사업자가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유형자산·무형자산·영업수익·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을 사업구역별로 분리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2.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비용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보고서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제20663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24호, 2010. 10. 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64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개정 2009. 12.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개정 2010. 11. 1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31호

개정 2010. 12. 2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4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개별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교환기능, 전송기능, 일반지원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할당”이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역무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부”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역무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비(자산)”라 함은 특정기능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공통비(자산)”라 함은 2이상의 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전송역무

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이용계약자와의 전화가입계약에 의거 가입자 단말기기로 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시내전화서비스: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으로부터 시외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시외전화서비스: 시외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에서 국제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 국제전화서비스: 국제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이후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공중전화서비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용 단말기기와 동단말기기로 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 전화번호안내서비스: 114호등에 따라 이용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

사. 전화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비스로 구분을 추가하여야 한다.

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차.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ISP간 인터넷호의 교환이나, 타 ISP의 호를 제 3 ISP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카. 인터넷전화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구내통신서비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파. 기타전송서비스: 가입전신서비스 등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전송서비스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다. 무선호출서비스: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바. 선박무선통신서비스: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사.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저궤도위성 또는 중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아. 위성통신서비스: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차. 와이브로: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

카.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가목부터 차목까지 이외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가.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통화권내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 나.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통화권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 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 라.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방송용등 특수한 용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4.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제4조(회계분리의 절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

1. 형태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
4.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
5.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의 역무별 회계분리

제5조(회계정리단위) 사업자는 지역 또는 현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산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분리하는 최소단위(이하 “회계정리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제6조(유형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형태별 분류는 회계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형자산등의 취득) 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인수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전기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가치만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② 취득 이후 유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계

상한다.

제8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3.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④ 무형자산(제7조제1항제3호의 영업권포함)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분류) ①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② 요금수익을 가입비수익, 기본료수익, 정액요금수익, 통화료수익, 장치비, 부가서비스수익, 기타 요금수익으로 구분한다.

③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급여, 잡급, 퇴직급여
2. 경비
 - 가. 복리후생비
 - 나. 여비 교통비
 - 다. 통신비
 - 라. 전력수도료등
 - 마. 전과사용료
 - 바. 체세공과금등
 - 사. 소모품비
 - 아. 지급임차료

- 자. 수선유지비
- 차. 차량비
- 카. 보험료
- 다. 지급수수료
- 파. 교육훈련비
- 하. 접대비
- 거. 광고선전비
- 너. 판매비
- 더. 잡비

3. 설비사용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회선료등
4.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상각액: 무형자산의 상각액
6. 대손상각비
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연구부문에서 발생된 비용 중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8. 국제정산부담금: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중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
9. 접속료: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중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10. 내부거래비용: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업무 및 서비스가 다른 업무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업무 및 서비스가 제공 업무 및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11.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제10조(내부거래의 인식) ① 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내부거래라 한다.

② 전송업무 및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의 내부거래를 인식하며 내부거래 단가는 해당연도의 접속통화요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속통화요율이 없는 서비스간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기반한 단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식할 수 있다.

제11조(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
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 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전기통신역무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결합판매 심사(심사기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
2. 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용

제 3 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

제13조(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 ① 전기통신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2. 전송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송설비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 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3. 선로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선로설비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 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4. 단말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단말장치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5. 정보처리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정보처리설비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6. 전원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7. 전기통신공통설비: 전기통신설비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능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설비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화되,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접속원가 산정 대상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비 및 구간 별로 세분류하여야 한다.

1. 교환기능설비
 - 가. 단국교환설비
 - 나. 이동단국교환설비
 - 다. 이동중계교환설비
 - 라.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
 - 마. 탄뎀교환설비
 - 바. IGS교환설비
 - 사. 시외교환설비
 - 아. 국제교환설비
 - 자. 데이터교환설비
 - 차. 교환기능공통설비
2. 전송기능설비
 - 가. 가입자중계 전송설비
 - 나. 기지국설비 및 제어장치

- 다. 시내중계전송설비
- 라. 0x 회선중계전송설비
- 마. 시내접속중계전송설비
- 바. 시외중계전송설비
- 사. 00x 회선중계전송설비
- 아. 국제중계전송설비
- 자. 이동중계전송설비
- 차. 전송기능공통설비
- 3. 선로기능설비
- 가. 가입자 선로설비
- 나. 가입자중계선로설비
- 다. 기지국중계선로설비
- 라. 시내중계선로설비
- 마. 시내접속중계선로설비
- 바. 0x 회선중계선로설비
- 사. 시외중계선로설비
- 아. 00x 회선중계선로설비
- 자. 국제중계선로설비
- 차. 이동중계선로설비
- 카. 선로기능공통설비

제15조(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통신망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와 회계 규정 제9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제16조(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① 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격, 도착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13조 및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1. 교환운영비용: 제13조에 따른 교환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전송운영비용: 제13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선로운영비용: 제13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4. 단말운영비용: 제13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정보처리운영비용: 제13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6. 전원운영비용: 제13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7.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8.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나. 판매영업기능자산 운영비용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

9. 판매영업기능비용: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판매촉진비: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의외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10.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다만, 콜센터(가입자와의 전화응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비용은 별도 구분한다.

나.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 비용: 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다. 청구·수납비용: 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1. 일반관리기능비용: 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2.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설비사용료의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송 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 공통 전용회선료는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한다.

③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④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상각액은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⑤ 제9조제3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①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②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2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19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20조(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전기통신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역무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회계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20조를 준용하여 분류한다.

제 4 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22조(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①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역무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2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3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③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판매영업기능공통비와 고객서비스기능공통비는 결합판매서비스공통으로 분류하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④ 제1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 중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 및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제23조(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교환운영 공통비는 교환기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다만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
2.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전송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 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3.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하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

③ 선로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운영 공통비: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순으로 배부

④ 단말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단말기능의 역무별 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⑥ 전원운영 공통비는 전원기능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준으로 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 역무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

2. 제1호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제25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판매영업기능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역무별로 배부한다.

1. 광고선전비: 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3.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제26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 역무별 가입자수 비율.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2.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3. 청구·수납 비용: 역무별 청구건수 비율

제27조(일반관리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일반관리기능 공통비는 역무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28조(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기업이미지 광고기능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29조(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제23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 ② 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 ③ 무형자산상각액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은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 ④ 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⑤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기집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⑥ 접속료는 역무별로 직접할당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매출액(접속료 수익 제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출연금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 ② 전기통신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중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 ③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따른다.
- ④ 법인세비용은 역무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① 교환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역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

부가액비율을 적용한다.

② 전송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 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
2. 사용시간, 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회선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서비스별 사용량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역폭 비율로 배부

③ 선로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T1급으로 산출한 운용회선수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기능설비: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
- ④ 단말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 기준으로 한다.
- ⑤ 정보처리기능설비는 역무별 대역폭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⑥ 전원기능설비는 공통자산 배부후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32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배부)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공통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 역무별 전기통신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인원수 비율

5. 기업이미지광고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제33조(기타 역무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부) ① 공통 미착자산은 제31조 및 제32조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역무별 분류는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가액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통 건설중인 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통 무형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3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4조(총괄원가) 전기통신역무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의 총괄원가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 영업비용의 주요 항목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제9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2. 감가상각비: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

3. 판매촉진비

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나. 이용약관에 따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을 판매촉진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투자보수) ①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기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2.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 재고자산: 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 등 전기통신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4. 적정운전자본: 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의 구성
2. 사업자의 경영여건
3. 법인세 부담정도 등

제 5 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6장 보칙

제40조(배부기준등의 적용) ①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제시한 배부기준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41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년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사항은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에 한한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정리단위 내역 및 조직도
2. 각 기관별 배부방법
3. 원가의 흐름도
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5.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방법
6. 제14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분류 방법
7. 역무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
8.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 까지 수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월이내에 회계 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 ②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디스켓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중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 ④ 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과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서의 검증등)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계분리지침서 검토 및 영업보고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44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역무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분기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제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단위로 표시하여 실제 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등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
2. 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
3. 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
4.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세부분류방법
5. 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6. 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
2. 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 구분
3. 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4. 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
5. 해당자산이 제각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매각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통계의 보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후 7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만 보고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4. 역무별 영업수익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5. 판매업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 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별 분류 명세서(별지 제10-2호 서식)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재무상대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3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8-64호, 2008. 5. 19.>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은 2007 회계연도의 신규자산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09-27호, 2009. 11. 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3호, 2009. 12. 30.>

이 고시는 2009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부터 적용·시행한다.

부칙<제2010-31호, 2010. 11. 11.>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45호, 2010. 12. 20.>

이 고시는 2011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부터 적용·시행한다.

● 저 자 소 개 ●

함 창 용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Michigan 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 UC, Berkeley 경영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혼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경 석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변 정 욱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 아 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다-10

시장분석 및 회계제도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rket Analysis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Accounting Regime)

2011년 12월 일 인쇄

201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인 성 문 화
